



20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2022년 12월 1일 (목)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기념행사 공동주최단
주관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후원 기획재정부



20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2022년 12월 1일 (목) / 국회도서관 대강당

[기념행사 공동주최단]

윤모린(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장)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윤봉란/이사장) 주가연 독산누리사회적협동조합(장은경/이사장)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박남수대표 번역협동조합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나정은 (양현고등학교 교사)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대표이사 신효진(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김홍섭 회장 금호고사회적협동조합 (이희옥 이사장)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이미애 이사장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심수진,사무국장) 김문규(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마을공동체팀장)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김연화 이사장) 양현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YHAM(얌) 나정은 교사 양현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얌 (실무자 류시화) 정경화(영림중사회적협동조합) 천천고등학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미경 이사장) 광주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나용수 회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이상우, 상임이사) 이상우(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구로고사회적협동조합. 정미선 사무국장 강민수 이기대(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상담지원팀장)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강민수 센터장) 현암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오수산나(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김정두(전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두레생협연합회(회장 김영향) 경기남부두레생협 서울북부두레생협 은평두레생협 춘천두레생협 안양Y등대생협 평택두레생협 푸른두레생협 고양파주두레생협 에코생협 팔당생협 시흥Y생협 바른두레생협 서울남부두레생협 원주생협 울림두레생협 한울안생협 아름다운두레생협 주민두레생협 참좋은두레생협 성동두레생협 경기두레생협 안성두레생협 생태유아공동체생협 경희대생협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유은주사무국장) 이상직(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센터장)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오수산나 사무처장) 재단법인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윤아 팀장) 사회적협동조합 빠띠(황현숙 이사)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민동세, 이사장) 한문영고교육경제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김홍래.관리이사) 가재울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김남훈 이사장) 계성샛별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민동세, 이사장)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협의회 제고쿱사회적협동조합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김윤권 사무총장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 보광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준구 담당교사 및 교직원 이사) 광신방송예술고 사회적협동조합(박선준 이사장) 수영강생태문화협동조합 장석순 이사장 한국반려식물협회 김복순 이사장 권응환 강진희 협동조합 착한책가게(전광철/ 이사장) 문경여고사회적협동조합(정성호 이사) 윤인정 용인시협

동조합협의회부회장 해피브릿지협동조합 북서울신협 (전무 전재홍) 김홍섭(전국학교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장이수(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홍래(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스마일어게인사회적협동조합(최승주/이사장)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상임이사 오산) 더열린숲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송양빈 이사장) 라온경제교육 사회적협동조합 김은선 이사장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송직근(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이대중(부산대학교 교수) 청년협동조합 봉땅 서대문협동조합협의회(김복남 회장) 박윤섭(노무법인 의연, 대표 공인노무사) 경기제일신협(이광연 전무) 협동조합공작소 이사 이종제 동암신용협동조합(이재열 전무) 소래신협(부장 김미영)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소장 이두영) 청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두영 김선희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흥덕고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양경숙)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 이종협동조합연합회(김은선/회장)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김윤석, 주임) 모아사회적협동조합, 조상우 팀장 팔공신협(전영호 전무) (협)아이티서비스 이사장 유선태 사회적협동조합 행복 한돌봄 안창숙 이사장 (사)한국협동조합학회(김아영) 아이쿱생협연합회(회장 김정희) 및 전국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원조합 김포시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상임이사 김순희)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정영화 상임이사) 국회의원 윤호중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 의원 배진교 김아영 국회 사회적경제연대포럼 (대표의원 윤호중) 조완석(한살림연합 상임 대표) 윤형근(한살림연합 전무이사) 이명(한살림서울 이사장) 서미영(한살림고양파주 이사장) 박영순(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 김유진(한살림경기남부 이사장) 김수현(한살림경기서남부 이사장) 박소현(한살림경기동부 이사장) 정재훈(한살림수원 이사장) 조성기(한살림원주 이사장) 김강선(한살림강원영동 이사장) 최연수(한살림춘천 이사장) 이희정(한살림청주 이사장) 김인원(한살림대전 이사장) 김형란(한살림천안아산 이사장) 김현숙(한살림충주제천 이사장) 문혜선(한살림대구 이사장) 박명남(한살림경북북부 이사장) 장병윤(한살림부산 이사장) 김정영(한살림울산 이사장) 변효순(한살림경남 이사장) 장혜경(한살림전북 이사장) 강경자(한살림광주 이사장) 엄혜원(한살림전남남부 이사장) 한애경(한살림제주 이사장) 박용준(한살림생산자연합회 회장) 곽현용(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김선심(한살림생산자연합회 부회장) 박승규(한살림생산자연합회 부회장) 지완선(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회장) 신명호(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정현숙(한살림연수원 원장) 정미라(한살림경주 이사장) 민석현(한살림경북동부 이사장) 이진희(한살림경북서부 이사장) 강말숙(한살림동서울 이사장) 김효진(한살림서서울 이사장) 한인숙(한살림남서울 이사장) 김은주(한살림북서울 이사장) 허효진(한살림경인 이사장) 정성호(문경여고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제주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김문규, 사무국장) 행복중심생협연합회(안인숙 회장) 협동조합고치(정서원 이사) 이진서(리앤행정사합동사무소/대표)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연정민 이사)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전국주민협동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우리함께) 전국학교협동조합연합회 장지현 김대훈(전국협동조협의회 사무총장) 전국협동조합협의회(사)부산협동조합협의회 광주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제주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후원 · 협력]

후원 기획재정부 · 협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2022년 12월 1일 (목) / 국회도서관 대강당

모시는 글

2022년 12월 1일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협동조합기본법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 2012년 12월 1일 본격 시행되어 2만 3천여 개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탄생하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농업, 수산, 산림, 금융, 소매, 중소기업 등 제한된 산업과 업종, 분야에서만 공식적인 협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기본법 국회 통과, 2012년 제정, 시행 이후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협동조합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활동의 모델로서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지역, 경제, 사회에 대한 기여, 영향도 날로 확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역량 강화와 자조, 지역 간 불균형, 세대와 계층 간의 양극화, 기후위기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여, 공헌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여러 공동의 주최자분들과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202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을 맞아 전국의 모든 협동조합인들과, 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정, 지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10년,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협동조합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협동조합인들, 그리고 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향하는 길에 늘 손잡고 동행하겠습니다.

2022. 12. 1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박강태, 공동대표 김상현, 나용수, 손종현, 임종한)



20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2022년 12월 1일 (목) / 국회도서관 대강당

[1부 프로그램]

1부 기념식 “축하·회고·감사”		
09:30~10:00		참가 등록
10:00~10:30	개회사 축사	개회 _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및 공동주최자 모두 함께 축사 _ 국회의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축사 _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 축사 _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축사 _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 회장 (영상)
10:30~11:30	좌담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10년의 회고	모더레이터 _ 김아영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패널 _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 (기본법 제정 당시 제정연대 운영위원장) 패널 _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기본법 제1호 설립 신고 협동조합) 패널 _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기본법 제정 당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패널 _ 손낙구 김정호 의원 보좌관 (기본법 제정 당시 손학규 의원실 보좌관) 패널 _ 이대중 부산대학교 교수 (기본법 제정 당시 기재부 협동조합팀 팀장)
11:30~11:50	감사장 전달	기본법 제정연대 참여 단체 및 실무진 / 개별법 협동조합
11:50~11:55	기념 영상 논평 낭독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기념 영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날의 논평 : 기본법 환영 논평 다시 읽기
11:55~12:00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모두 함께



20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2022년 12월 1일 (목) / 국회도서관 대강당

[2부, 3부 프로그램]

2부 기념포럼 “도전·성취·과제”		
12:30~13:15	참가 등록	
13:15~13:30	개회 축사	개회 _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 (김상현, 나용수, 손종현, 임종한) 축사 _ 개별법 협동조합, 협동조합/사회적경제 지원기관
13:30~15:00	세션 1 협동조합이 쏘아 올린 변화의 신호탄	모더레이터 _ 김은선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성취와 시대적 소명 연사(키노트) _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미래세대에 전하는 협동조합의 가치 연사 _ 연정민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협동조합이 만드는 지역 돌봄의 체계 연사 _ 우세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택시운수산업의 지형 변화를 이끈 택시 협동조합 연사 _ 심경현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장 기후위기의 시대, 협동조합의 도전 연사 _ 심형진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종합 토론
15:00~16:30	세션 2 협동조합의 도전 미완의 퍼즐 & 미래의 상상	모더레이터 _ 김상현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협동조합의 진통, 성숙을 위한 도전과 과제 연사(키노트) _ 김아영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청년 세대와 협동조합의 미래 연사 _ 이두영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금기의 영역에 대한 도전, 금융과 문제 연사 _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생태계의 상상과 도전 연사 _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연사 _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종합 토론
3부 기념선언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16:30~16:50	기념선언 검토	기념선언 검토
16:50~16:55	기념선언 발표	기념선언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채택 및 발표
16:55~17:00	기념촬영/폐회	기념촬영 및 폐회



20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2022년 12월 1일 (목) / 국회도서관 대강당

[자료 목차]

1부 기념식	축하 서신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 회장 (영상/서신) -----	13
	그날의 논평 협동조합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화 환영 논평 (2011.12.29.) -----	17
2부 기념포럼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성취와 시대적 소명 연사(키노트) _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	21
	미래세대에 전하는 협동조합의 가치 연사 _ 연정민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	33
세션 1 협동조합이 쓰아 올린 변화의 신호탄	협동조합이 만드는 지역 돌봄의 체계 연사 _ 우세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	44
	택시운수산업의 지형 변화를 이끈 택시 협동조합 연사 _ 심경현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장 -----	61
2부 기념포럼	기후위기의 시대, 협동조합의 도전 연사 _ 심형진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	81
	협동조합의 진통, 성숙을 위한 도전과 과제 연사(키노트) _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교수 -----	95
세션 2 협동조합의 도전 미완의 퍼즐 & 미래의 상상	청년 세대와 협동조합의 미래 연사 _ 이두영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	107
	금기의 영역에 대한 도전, 금융과 공제 연사 _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	123
3부 기념선언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생태계의 상상과 도전 연사 _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	135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연사 _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	147
	기념선언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	161

축하 서신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장**

Dear friends of the 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 of Korea.

I would like to send you and all the members of Korea Cooperative Solidarity my warm and respectful greeting on this important journey.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at historic 2012, which was declared by the United Nations as the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For us, it was a significant recognition from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hat co-operatives build a better world. Indeed, our track record over two centuries, in every corner of the globe, proves that we are the best model for distributing development opportunities to all people, leaving no one behind.

It has also been ten years since the Korean cooperative movement achieved an adequat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growth of this model in their country. You know better than anyone the relevance of this achievement for cooperatives in various areas of the Korean economy. Workers, consumers, agricultural producers, students, users of various services... all those who choose the path of cooperativism in Korea can now do so in a more favourable environment.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t is a priority to obtain in each country, in each region and on a global scale, standards that favor the development of our business model. We support and celebrate each new progress in this regard and we are at the disposal of each of our members to continue influencing local public authorities, in addition to achieving an increasingly better posi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is sense, I join in the happiness expressed by your organizations on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Korean Framework Law and the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Together, we can continue to demonstrate that cooperation is the best path to well-being, peace and social inclusion.

I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share these words with you, I wish you an excellent day and I send you from a distance a strong cooperative greeting.

한국 협동조합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이 중요한 여정에 대해 여러분과 한국 협동조합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유엔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 역사적인 2012년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전 세계 정부가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200년에 걸쳐 전 세계 곳곳에서 거둔 실제 우리의 성과는 우리가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최선, 최고의 모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이 협동조합 모델의 성장, 발전을 위한 적절한 법적, 제도적 틀을 달성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협동조합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노동자, 소비자, 농산물 생산자, 학생,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 협동조합 등 한국에서 협동조합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유리한 기준을 각국에서, 각 지역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로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새로운 진전을 지지하고 축하하며 국제기구에서 점점 더 나은 위치를 달성하는 것 외에도 지역 공공 당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각 구성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과 협동조합의 해 10주년을 맞아 여러분들이 여는 행복한 기념행사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협동이 행복한 삶, 평화, 사회적 포용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서나마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날의 논평

**협동조합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논평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 (2011.12.29)**

53년간 지속된 ‘협동조합 개별법 시대’의 마감에 부쳐

경쟁과 이윤 중심에서 협동과 사람 중심으로!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협동조합기본법 통과를 환영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3일 앞둔 시점이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53년간 지속됐던 협동조합 개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를 열어젖혔다. 협동조합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법을 만들어 오던 지금까지와 달리, 이제부터는 오늘 통과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공식 협동조합 및 생협 진영을 대표하는 32개 단체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협동조합기본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아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첫째, 앞으로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지역농협의 경우 1,000명, 생협의 경우 300명이 모여야 설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설립기준은 그 동안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막는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기본법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대폭 낮추었다.

둘째, 금융·신용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차산업 및 금융·소비 부문의 협동조합만 설립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2·3차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졌고 산업이 고도화됨으로써, 새로운 산업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기본법은 이러한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했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전통적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 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100년이 넘는 협동조합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 발달한 협동조합 형태이다. 이번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동조합 법제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게 됐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 설립인원을 3명으로 더욱 낮추고, 제한적으로라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선거관여금지·선거운동제한 등 불필요한 조항을 없애는 것 등은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간 적절한 법인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실천해 온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원칙과 가치에 보다 충실히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iCOOP생협연합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나눔의집협의회, 대학생협연합회, 사람과마을,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신나는조합, 여성민우회 생협연합회, 온케어(도우누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청소대안기업연합회,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한국대안기업연합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YMCA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함께일하는재단

기념포럼 1세션
[협동조합이 쏘아 올린 변화의 신호탄]

주제발표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www.kcdc.co.kr

1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성취와 시대적 소명

김성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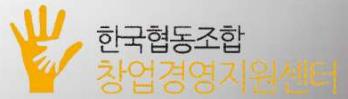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순서

1.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현황에 대한 이해
2. 한국 협동조합운동이 만난 5대 사회적 과제들
3.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목표설정, 목표달성 전략
4. 한국협동조합운동의 미래를 위한 긴급 제안



1. 한국협동조합운동 현황에 대한 이해

한국협동조합의 현황 - 선배 협동조합들

- 협동조합기본법 이전, 8개의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현황

1) 농업협동조합

- : 1961년 출범, 단위조합 1118개, 조합원 약 200만명
- : 자산규모 약 600조원, 1년 사업규모 900조원(지회사 포함)
- : 종사자수 약 9만여명
- : 조합원 평균 연령 72세

2) 수산업협동조합

- : 1961년 출범, 단위조합 91개, 조합원 약 15만명
- : 1년 사업규모 약 43조원

1. 한국협동조합운동 현황에 대한 이해

한국협동조합의 현황 - 선배 협동조합들

- 협동조합기본법 이전, 8개의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현황

3) 중소기업협동조합

: 1961년 출범, 단위조합 570개, 조합원 약 5만여개 회사

: 관련단체 39개, 관련단체 회원수 약 60만개 회사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변경

4) 신용협동조합

: 1972년 법적 지위 확보, 단위조합 873개, 조합원 약 650만

: 자산규모 약 120조

: 활동조합원은 약 30만명으로 추산함

5

1. 한국협동조합운동 현황에 대한 이해

한국협동조합의 현황 - 선배 협동조합들

- 협동조합기본법 이전, 8개의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현황

5) 산림조합

: 1980년 출범, 단위조합 147개, 조합원 약 3만명(추정)

: 1년 사업규모 약 3천억원

6) 새마을금고

: 1982년 법적 지위 확보, 단위조합 1295개, 거래자수 약 2,180만명

: 자산규모 약 260조

: 활동조합원은 약 10만명으로 추산함 (대의원 기준)

6

1. 한국협동조합운동 현황에 대한 이해

한국협동조합의 현황 - 선배 협동조합들

- 협동조합기본법 이전, 8개의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현황

7) 업연조생산협동조합

: 1989년 출범, 단위조합 19개, 조합원 약 3천명(추정)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1999년 법적 지위 확보, 먹거리 생협 연합회 4개, 의료생협 연합회 1개

: 한살림 - 23개 조합, 조합원 80만명

: 아이쿱 - 88개 조합, 조합원 23만명

: 두레 - 24개 조합, 조합원 23만명

: 행복중심 - 11개 조합, 조합원 약 4만명

: 의료생협 - 800여개조합까지 확대되었다가 현재는 약 100여개

7

1. 한국협동조합운동 현황에 대한 이해

한국협동조합의 현황 - 후배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발효(2012년 12월 1일) 이후 2022년 10월말 현재
약 24,000여개의 신규 협동조합 설립

: 일반협동조합 1945개, 사회적협동조합 4038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93개, 사협연합회 25개, 이종연합회 6개

- 전체조합원수 약 20만명 선으로 추산

- 평균상근인력 0.9명, 평균출자액 약 2,000여만원

- 작동률 약 20% 남짓..

- 작동협동조합중 10%는 어느정도 성공잠재력 있는 것으로 판단

8

1. 한국협동조합운동 현황에 대한 이해

한국협동조합의 현황 – 협동조합 이외 사회적경제기업들

-사회적기업 : 2000년대초반부터 본격화된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약 3,400여개, 인건비직접지원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 2010년대 시작된 마을주민 공동과제해결형 기업
행전안전부 인증기업, 약 1,600여개

-자활기업 :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사업의 성격, 보건복지부인증기업 약 1,000여개

: 최근 협동조합중 위 세가지 인증기업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9

1. 한국협동조합운동 현황에 대한 이해

한국협동조합의 현황 – 현재의 사회적경제및 협동조합 인프라

- 법률 :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관계법, 자활기업관계법, 마을기업 관계법령
- 조례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조례,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조례
- 지원기관 :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광역중간지원기관, 분야별 지원기관
:광역, 기초단체 지원기관
- 교육 : (학부과정) 대학원과정, 평생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 자금지원체계 : 사회 가치연대기금 설립, 각종 기금, 신용보증기관등

10

2. 한국협동조합운동이 만난 5대 사회적 과제 들

1) 일자리 문제

- 신규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성의 문제

2) 양극화 문제

- 자산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의 문제
- 일자리 양극화의 문제

3) 고령화 문제

- 복지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심화
- 존엄케어의 수요증가

4) 기후위기 문제

- 글로벌 스텐다드 강화의 문제

5) 지방소멸의 문제

- 대한민국이 서울메트로 공화국으로..

11

3. 한국협동조합운동의 목표 설정, 목표달성을 전략

목표설정

* 현재의 전체경제 비중 3% 시대에서 10% 시대로…

- 생산, 소비, 금융, 요양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커버하는 기본적인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 일자리문제와 양극화가 완화된 “따뜻한 시장”이 될 수 있다..
- 대기업의 독점횡포를 어느정도는 제어할수 있다..
- 요양산업에서 주도적인 플레이어가 될수 있다..

12

3. 한국협동조합운동의 목표 설정, 목표달성 전략

주요전략 1) - “전략적 협동조합의 육성”

-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육성
 - : 사업고용협동조합, 혹은 노동자협동조합, 스마트협동조합
 - : 문화예술, 과학기술, 통번역, 플랫폼 분야
- 택시를 비롯한 운송협동조합, 둘봄협동조합의 육성
 - : 대구택시협동조합, 버스협동조합
(대구택시협동조합의 놀라운 성과: 법인택시시장의 45% 점유)
 - : 둘봄협동조합 활성화 및 플랫폼비즈니스 선점
-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육성
 - : 소협아카데미, 프랜차이즈협동조합 활성화

13

3. 한국협동조합운동의 목표 설정, 목표달성 전략

주요전략 1) - “전략적 협동조합의 육성”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협동조합들의 육성
 - : 햇빛발전협동조합, 리사이클링협동조합, 제로웨이스트 협동조합의 육성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고령화문제에 대한 대응
 - : 존엄케어를 실천하는 요양망의 구축
 - : 지역통합둘봄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는 전략 실행

14

3. 한국협동조합운동의 목표 설정, 목표달성 전략

주요전략 2) - “협동조합지역사회의 육성”

- [협동조합지역사회론의 제기] - 1980년 레이드로 박사
- [협동조합지역사회]의 핵심 키워드
“요람에서 무덤까지 협동조합으로 !”
출산, 보육…교육…생산, 제조…의료…여행, 레저…주택, 생활편의…
요양, 장제 등 기본적인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협동조합으로
풀어가는 것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협동조합들과 연대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
(스페인 몬드리안,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블로냐, 캐나다 케벡지역)

15

3. 한국협동조합운동의 목표 설정, 목표달성 전략

주요전략 2) - “협동조합(사회적경제)지역사회의 육성”

- 현재 사회적경제로 커버되는 생활 영역들
 - 1) 농업생산과 유통 - 농협, 수협, 산림조합
 - 2) 금융과 생활자금 -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 3) 친환경 먹거리 - 생협
 - 4)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일부 - 자활
- 사회적경제로 커버해야 하는, 남아있는 영역들
 - 1) 보육 및 교육
 - 2) 의료
 - 3) 레저, 여행, 생활편의 서비스
 - 4) 실버, 요양, 장제

*** 일자리 ***

16

3. 한국협동조합운동의 목표 설정, 목표달성 전략

주요전략 3) - “협동조합인프라 개선”

- 법률과 제도 :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및 협동조합기본법개정
- 설립지원기관확대 : 유형별, 업종별 전문기원기관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교육체계 : 학부과정확대, 대학원과정 확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확대
- 자금지원체계 : 투자와 대출이 가능한 전문펀드 설립과 운용
- 인력지원체계 : 협동조합경영스텝 양성과정 개발 및 확대

17

3. 한국협동조합운동의 목표 설정, 목표달성 전략

주요전략 4) - “협동조합 성공모델의 발굴과 확대”

- 현재의 후배협동조합들은 모두 스타트업단계에 있음
“협동조합의 스타트업기간은 일반기업보다 길다”
- 일반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경로는 다르다.
: 일반기업은 계단식 성장
: 협동조합은 점프식 성장
- 중요한 것은 성장잠재력의 발굴과 성공조건의 완비

18

4. 한국협동조합운동의 미래를 위한 긴급제안

제안 1) - ‘협동조합 활성화펀드’조성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만듭시다..!!

제안 2) - ‘선후배협동조합 협의회’ 구성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만듭시다..!!

19

수고하셨습니다
느낌이 좋았습니다



20

기념포럼 1세션
[협동조합이 쏘아 올린 변화의 신호탄]

사례발표

연정민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미래를 여는 학교협동조합

CONTENTS

- 01 학교협동조합의 정의
- 02 학교협동조합의 현황
- 03 미래교육과 학교협동조합
- 04 학교협동조합의 과제와 방향



01. 학교협동조합의 정의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회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02. 학교협동조합의 현황

8



학교협동조합 : 172개(21지점 등 포함)

학교협동조합의 사업



- 안전한 먹거리와 소통공간 (학교가게)
- 학생복지 지원 (교복 및 학생복 구매 / 자판기 설치)
- 체인지메이커 (나도 CEO / 스타트업 페스티벌)
- 지역사회와 연대 (김장 나눔/공정무역 / 제로웨이스트)



학교가게 운영



방송국 운영

온라인 쇼핑몰
운영



03. 미래교육과 학교협동조합



- 미래교육의 키워드 : 다양성, 자율성, 협력
- 미래 인재 역량 : 개념설계능력_ 다양한 도전, 안전한 실패의 경험
문제해결 능력_ 필요와 목적 발견, 맥락의 이해와 연결 능력
공동체와협력_ 자신의 강점 발휘, 타인과의 협업능력









공동체와의 협력

04. 학교협동조합의 과제

운영진의 잦은 교체

학교 관리자교체,
학생 졸업,
교직원 전근 등

운영진의 업무 부담

세무, 회계, 노무, 법무,
행정, 경영관리 등

수익 발생의 제한

수익 발생이 취약한 구조,
임원진의 자원봉사

학교협동조합의 방향성

독립성과 협력

학교와의 상호협력적 관계유지
학교협동조합의 독립성 확보
공동체 정신 기반의 협업 활동

교육과 다양화 전략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개발 및 교육
학교협동조합 유형 및 수익모델의 다양화
민주적인 운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지원과 제도확립

학교협동조합의 정체성 정립과 법적근거 마련
구성원의 주체별 역할 명시
지역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감사합니다

co
op

기념포럼 1세션
[협동조합이 쏘아 올린 변화의 신호탄]

사례발표

우세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협동조합이 만드는 지역건강돌봄의 체계

2022.12.01.
상임이사 우세옥



함께 나눌 이야기

1. 한국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
2. 의료사협이 의료(건강)돌봄 현장에 미치는 영향, 사례
3. 지역기반의 건강돌봄체계를 위한 의료사협의 향후 비전과 과제





한국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



한국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 (35개)

2013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7 장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8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9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평택)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4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해바라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0 엘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강북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1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천안다정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5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2 라이프케어 경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수원)
2016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라이프케어 광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라이프케어 부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라이프케어 충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홍성) 위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대구)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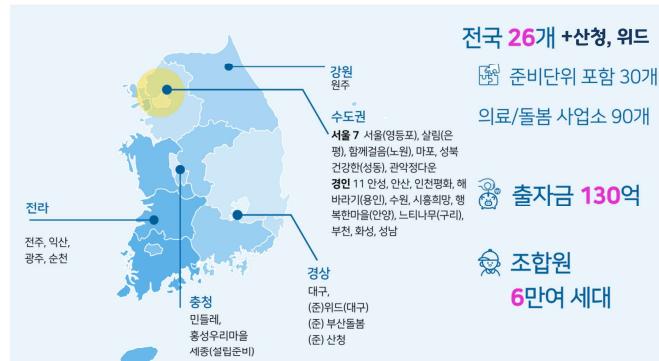
현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35개
한국의료사협연합회 회원 조합 : 현 28개

의료사협 설립준비지역: 완주, 세종, 상주, 양천, 양평, 광명, 강동, 제주,
(창업경영지원센터) 부산돌봄, 강릉 등 10여곳

연합회 주요 연혁

- 04~08 재가케어복지(길동무) 사업단
- 09~11 사회적기업가학교-보건의료복지과정
- 15~16 장애인주치의 사업 "우리 마을은 모두가 건강해요"
- 17~22 팀 기반 방문의료사업 (씨앗재단)
- 21~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 22~ 다학제 접근 모형 방문의료사업(아름다운재단)

연합회 회원 조합 현황 (22년 6월 기준)



7대 회원조합 지표-> 재구성 검토중

7대 지표 10%이상 성장
기본성장지표 + 사회가치지표 재구성



구분	지표	2021년	2022년 목표	성장을	비고
1	회원조합 수	26개	30개	15%	부산, 산청, 대구 외 1곳
2	조합원 수	54,249명	60,000명	15%	
3	출자금	155억	200억	29%	
4	매출액	524억	600억	15%	
5	활동조합원	3,060명	3,500명	14%	자원봉사자, 위원회 위원 수
6	건강모임	373개	450개	20%	
7	건강리더	788명	1,000명	26%	
8	직원 수(안)				2022년 7월 1960여명
9	사업소(안)				의료기관, 돌봄, 복지사업소
10	취약계층 의료 지원금	3억	3억 5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연합회 주요활동

연합회 주요 활동

- 01 정책 보건의료 / 사회적경제 정책 관련 대정부 활동
- 02 교육 신규 임직원 교육, 협동의료인 연수, 건강리더 교육
- 03 컨설팅 의료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 지원, 경영 컨설팅
- 04 네트워크 사회적 경제 영역,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동조합 등
- 05 홍보 의료사협 가치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 06 조직 총회 및 각 분야별 위원회 운영 및 지원



2022년 의료사협 경영자 교육



2022년 의료협동조합 협동의료인 연수
"의료사협과 지역통합돌봄운동"



의료사협이 지역 현장에 미치는 영향, 사례



환자를 찾아가는 사람들

방문의료 이야기

방문의료연구회 제공

스토리플레이너

아름다운재단 방문의료지원사업 (2022~3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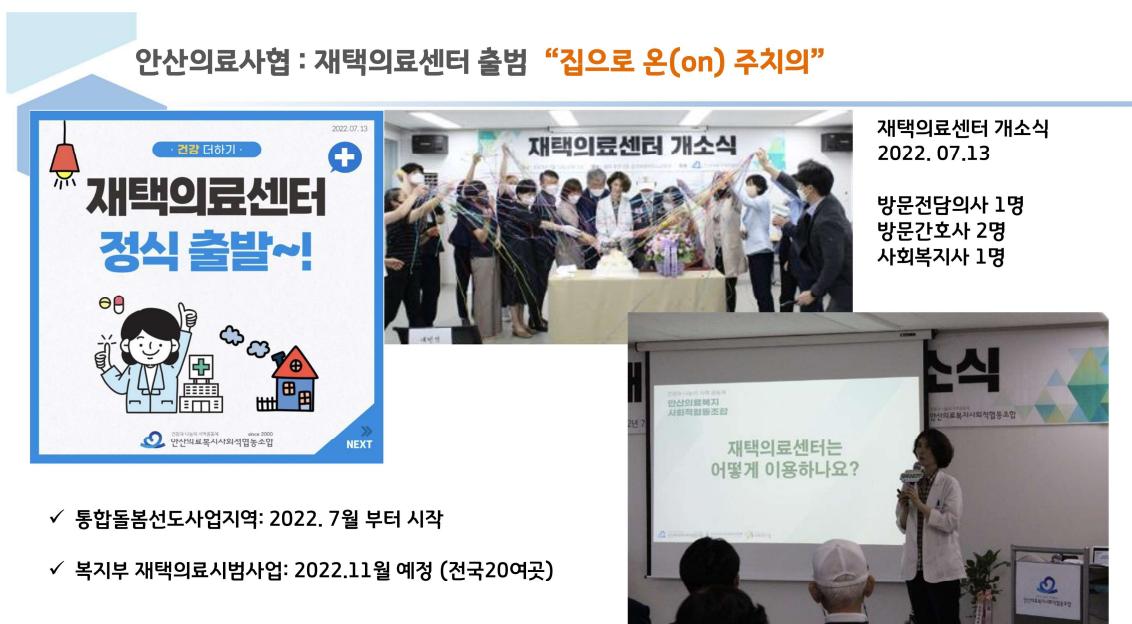
- :5개 지역 시범사업 진행중
안성의료사협
- 부천의료사협
- 인천평화의료사협
- 시흥희망의료사협
- 관악정다운의료사협

〈사업목표〉

다학제 팀기반 방문의료
방문코디네이터 활성화
→실무 매뉴얼 활용서 제작
→실무역량 조사
→사례관리 실무역량 강화

재택의료시범사업 선정 2022년 12월 시작~ (2022.11.18)

10곳 선정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 방문의료
대상: 장기요양 등급1~4등급 거동불편 노인 등
재정: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함께걸음 의료사협 사례

코로나 시대 ! 서로돌보는 마을 “어르신 휴 센터”

노원구 어르신의 약 18%(16,000여명)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음

돌봄을 받고 있는 18%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마을에서 일상적인 건강유지 및 고립되지 않는 마을 기반의 이웃 관계망 구축



구분	전체	장기 요양보험	맞춤돌봄	자살예방 심리상담사	똑똑똑	함께걸음 서로돌봄
참여자	6,818명	6,200명	243명	55명	200명	120명
대상자	16,199명	6,239명	3,760명	200명	6,000명	2,100명
예산	302억3천	240억	48억	2억1천만원	7억2천만원	3억



사례: 함께걸음의료사협 “어르신 휴센터”

❖ 노원 어르신휴센터

▣ 제도 밖 홀몸어르신 돌봄사업

- 서로돌봄관계망 구축으로 고독사·자살 예방
- 건강소모임으로 만성질환 관리·치매 예방
- 동네별 서로돌봄단 운영
- 아파트 단지 내 민관협력 복지전달 시스템 구축

! 협동조합 사업(일몰) → 노원구 정책으로 제도화

구분	소모임 수	참여자	진행횟수	건강리더
상계10동	19개	200명	361회	29명
증계주공2단지	9개	120명	103회	14명
계	28개	320명	464회	43명

❖ 어르신휴센터 서로돌봄망체계

▣ 2개 동 → 19개 전동 확대



자료: 함께걸음, 편집 재구성 by 한국의료돌봄컨설팅협동조합 김연아

사례: 함께걸음의료사협 (노원구) “어르신 휴센터”



소모임리더 교육

- ✓ 소모임 진행 리더 정기 교육
- ✓ 교육받은 내용으로 소모임 진행
- ✓ 이론의+실기+운동 학습

바르게 걷기

7단지+대림아파트
(2020. 06~현재)

- ✓ 매2주 2회 진행
- ✓ 생활일지, 인바디검사,
- ✓ 주치의 상담



건강공동체 건강과 돌봄

발행처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발행인 박충기 기획 노인일자리사업팀 편집디자인 인쇄 디자인나비
주소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71번길 13 전화 031)672-6121, 674-6121, 070-7729-8548 팩스 031)674-7701
홈페이지 <http://www.asmedcoop.or.kr>



안성의료사협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연계 건강리더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자격증 (연합회)취득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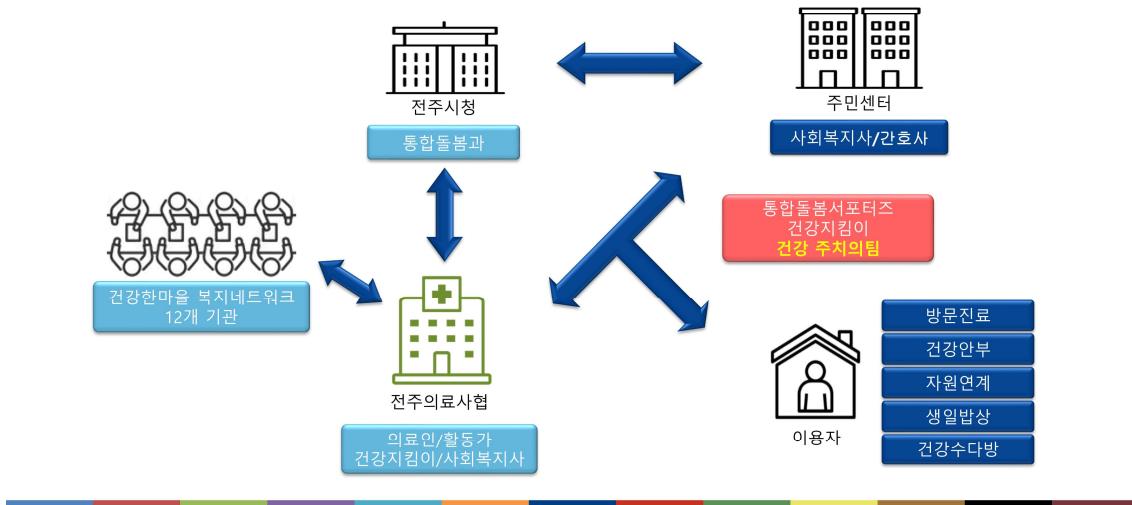
건강리더활동 사례회의의

안성시 공공기관에
배포되는
소식지(기관지)

안성시 자체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력

전주의료사협 사례 : 전주형 어르신 통합돌봄 2022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전주의료사협 사례: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 활동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건강리더)의 자발적 후원 → 건강공동체
-2021년도 건강지킴이 24명이 1,544건 후원



유모차 지원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걸을 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모차를 지원함

또 하나의 가족

평소 입맛이 없는 데다 반찬도
적당치 않아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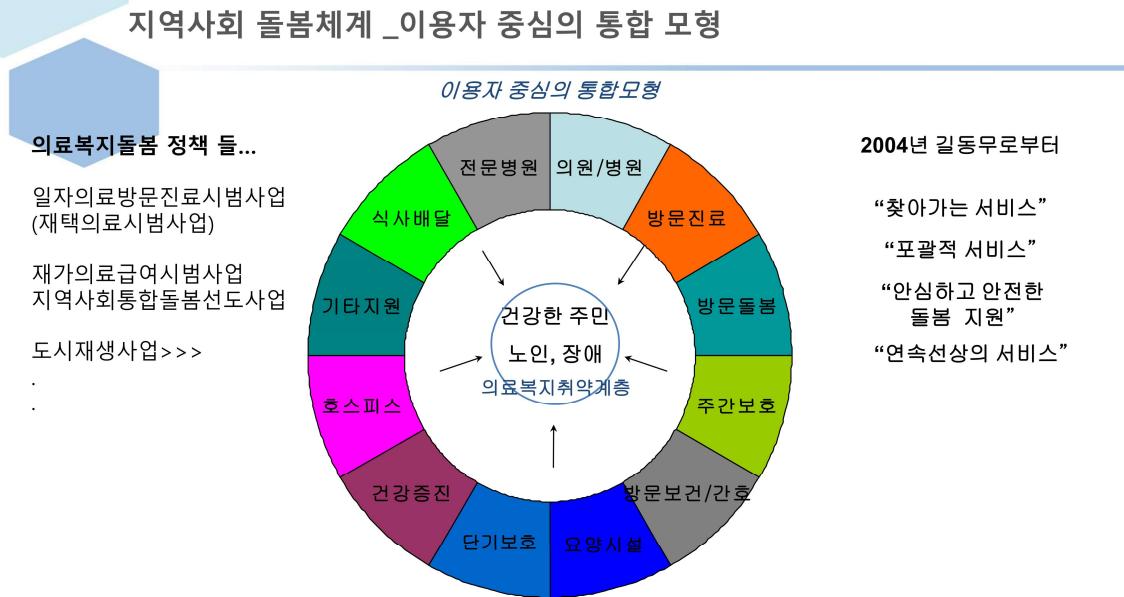
늘그막에 낳은 아들

넘어져 다친 상처를 방지해
상처가 더 커졌는데
건강지킴이가 소독약과
반창고를 사다가 치료해드린
배도 안 아프고 생긴 아들이라며
가족보다 좋다 하심

침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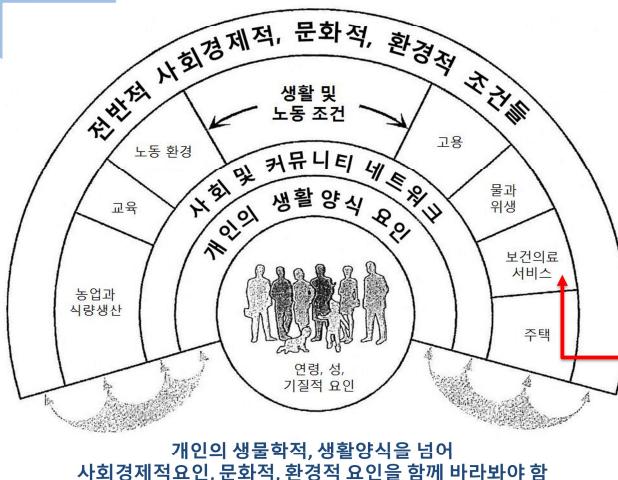
방에 습기가 많아 바닥에
눕기 어려운 상황이라
건강지킴이가 간이 침대를
지원함

지역사회 돌봄체계 _이용자 중심의 통합 모형



지역중심의 건강돌봄체계를 위한 의료협동조합의 향후 비전, 과제

관점과 방향 : 건강의 사회적결정 요인→ **총체적, 복합적, 중증적**



지역단위 접근

-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단위 접근이 모범적 대안으로 제기됨.

지역 구성원 참여와 역량강화

지역구성원의 참여와 역량강화는 지역 건강증진의 핵심

참여모형 적용의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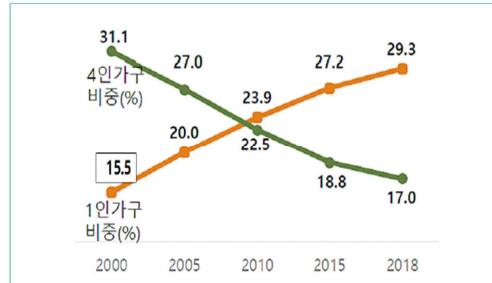
- 지역 주민 참여모형으로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적합성

보건의료서비스의 영역은 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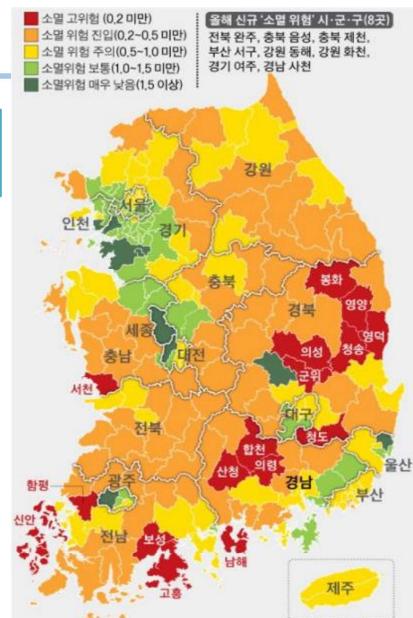
가까운 미래 _ 건강환경의 변화에 대응

- 1인가구의 증가
- 초고령사회, 건강+돌봄+사회서비스등 욕구변화
- 인구소멸 지역, 지역간 불균형 심화

가구 구성의 변화



자료: 통계청 kostat.go.kr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방향 (조직/ 사업)

개인으로부터 지역사회까지 “건강자치역량”을 높이는 일은 건강공동체로 향함

스스로를 돌보고

건강한 의료+ 돌봄사업소

- 지역기반의 일차의료(격정진료)
- 환자권리를 실천
- 돌봄 사업(장애인, 장기요양)
- 재택(방문)의료 실현

서로를 돌보고

건강한 생활조직

- 건강학교, (건강리터러시)
- 예방증심 조합원 활동과 사업
- 건강실천 활동
- 건강(번)모임/자조모임 / 소모임 조직화

마을을 돌본다

건강한 지역(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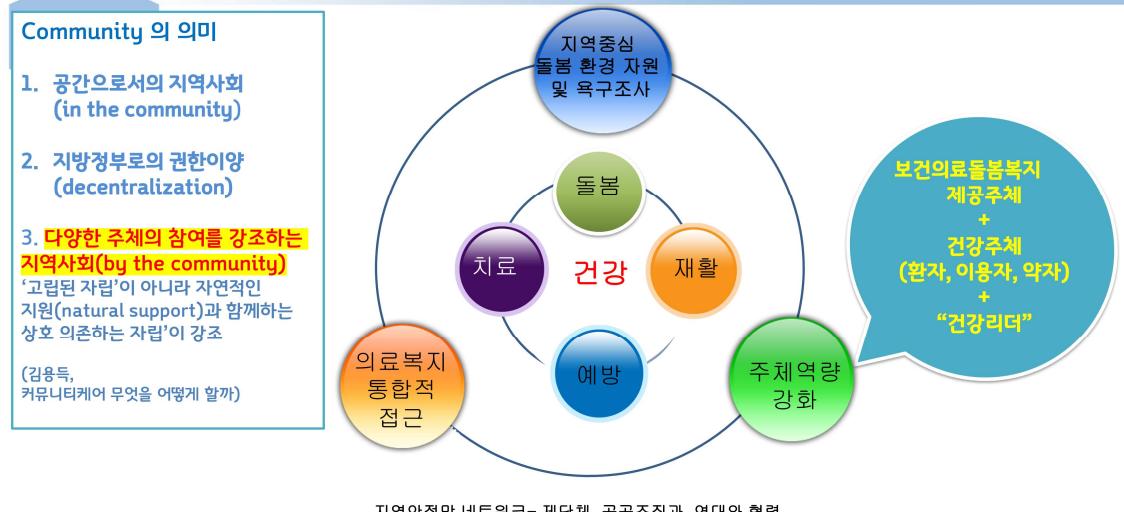
- 건강리더 (노인건강돌봄지도사)
- 지역 사회적경제와의 연대
- 자자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 Needs의 변화 민감 맞춤 대응
-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
- 건강자치역량: 개인→지역사회

• 개인(일상) 돌봄 체계

• 소집된 조조직

- 건강자치역량: 개인→지역사회
- 새롭게 사회적경제와 협력
- Needs의 변화 민감 대응

Aging in place(자신이 살던곳에서 살아기기)를 위한 지역사회의 의미와 전략



지역안정망 네트워크- 제단체, 공공조직과 연대와 협력

지역기반의 건강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한 의료협동조합 우선 과제

1 일차보건의료강화를 위한 주치의/예방사업 정책제도화

2 사회적경제조직,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 _거버넌스

3 서로돌봄의 체계 (지속가능한 모형), 공동체성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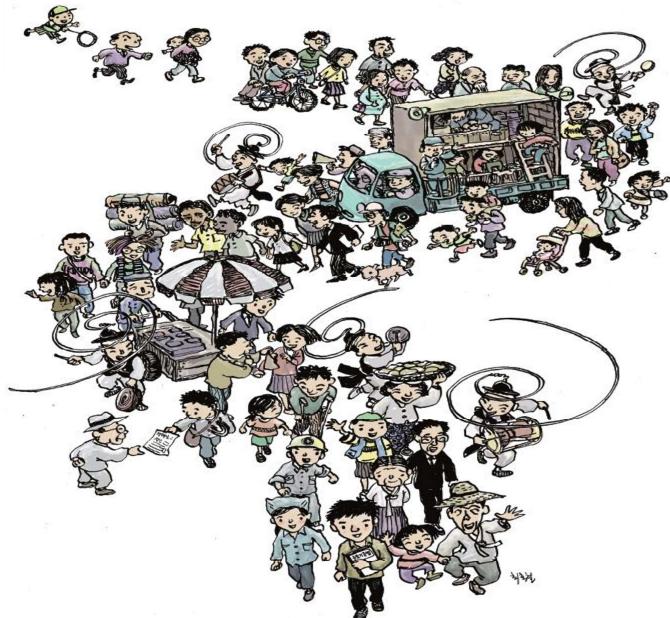
4 의료사협 설립과 성장, 생태계를 위한 법령, 정책개선

Copyright © 2018 by 우세록/연합회, all right reserved

24

과제와 한계

- 농어촌 지역의 의료체계 불균형. 농어촌 의료사협설립의 한계
500명 조합원, 1억원 조건충족의 어려움, 농어촌 지자체와의 협력과 거버넌스 절실
- 의료사협 설립 관련 법령
 - 주사업 : 의료기관 개설 필수로 인정, 1년이내 의료기관개설해야 함. 법인인가 취소조건
→창립 후 의료기관 개설까지 의료인, 자본, 조합원 확대 및 성장할 시간과 지원체계 필요함.
- 신규설립시, 자립성장 기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교육훈련, 경영전략 수립
- 법인세 (사회적협동조합의 공통과제) 감면 적용 제외
 - 소비자생협, 농협, 등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9개에만 적용. 역차별 요소
- 의료사협의 성장과정에서 규모화를 위한 건물매입등 자산화 전략필요, 자본조달 힘겨움.
 - 신협, 농협 등 금융 협동조합의 “협동조합간 협동”의 한계.
 - 사회적자본 조직화가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은?
- 시행령 미개정 : “자본이 총자산의 50%이상”으로 규정하는 법령 현실성없어 개정 시급



협동조합이
우리의 미래이며
건강의 도구이며
건강한 공동체이며
건강 그 자체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념포럼 1세션
[협동조합이 쏘아 올린 변화의 신호탄]

사례발표

심경현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장

산업 지형의 변화를 이끄는 택시협동조합

심경현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장

설립배경 및 목적

- 자가용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의 확대와, 법 제도변화 등으로 택시운송사업 어려움 증가

: 어려움은 법인택시 노동자의 수익감소와 불만족으로 업계를 떠나게 함
- 가동률 저하

1) 2016년 설립당시 택시업계 현황

- 개인택시: 개인택시 사업자 진입의 조건으로 영업용 무사고 3년의 경력 증명과 면허권 인수금액 약5~6천만원(대구기준)과 차량 구입비, 공제보험 가입비, 기타 장비 설치비 등 8천만원 이상의 자금 필요
- 법인택시: 승객 감소와 운송비 원가 상승 등으로 기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동률 50% 정도로 법인택시 사업자의 경영지표가 최악의 상황에서 대구시의 택시감차사업 시행 첫해로 기록되어 있음

- 자율적 운행과 수익증가, 존중과 동료 의식이 있는 자발적 규율을 가진 사업체 지향

- 공통의 필요 – 자율과 수익증가 그리고 공동체 지향

2) 협동조합 택시의 설립 목적

- 택시업계가 사양업종이라는 인식과 기사들의 속된 표현 그대로 “돈이 안된다”라는 인식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기사들은 이직하고 기사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상황에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단점을 보완한 시스템을 협동조합 기본원칙에 접목시키면 택시업계의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다는 계획하에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됨.
- 개인택시 구입 자금 1/3 정도의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납금 없는 법인택시로 개인택시 수입과 비슷한 수익구조 시스템과 협동조합의 장점인 공동필요 사항의 원활한 업무지원 시스템을 조합원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공동운영과 공동소유로 근로자가 주인인 근로자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됨.

- 공개에 기반한 공동경영, 부채 없는 공동소유, 자율 운행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수요감소로 사양산업화 되는 택시 산업을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로 새로운 일터로 만들어 내자

3) 기획 의도

- 법인택시의 높은 일 사납금과 자율성 없는 노동에 지친 법인택시 근로자에게 협동조합택시 근무로 생기는 자율성과 사납금 대신 공개된 투명한 운송원가와 조합운영비로 조합원 본인의 수익증대를 정확하게 공개한 투명한 공동 운영, 공동소유하는 근로자 경제조직
- 인생 이모작으로 개인택시를 고려하고 있는 정년, 은퇴자가 진입장벽 없이 택시업에 진입하여 택시 근무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스템 정립.
- 법인택시 경영의 어려움으로 휴업 중인 차량 양도양수가 용이했던 상황 적절히 활용.
- 결론: 경영이 어려운 법인택시 사업자와 노동에 지친 근로자와 새롭게 택시업에 도전하려는 모든 종사자에게 원인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음.
택시 승객들에게도 주인의식을 가진 근로자가 제공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택시 운송 사업 주관부서인 국토부 입장에서도 공동체 의식 속에 자발적으로 교육되어지는 협동조합의 기사들이 택시업에 가장 적합한 조직임을 인정하게 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음
- 법인택시 양도양수 자금을 100% 출자금으로 충당하여 부채 없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자는 발기인들의 의견에 따라 가입 설명회부터 부채 없는 조합을 지향하는 조합의 취지에 맞는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부채 없는 조합으로 운영함

주요 연혁

- 1) 2015년 12월 23일 가칭 대구택시협동조합 창립총회(27대)
- 2) 2016년 3월 1일 주사무소 및 차고지 이전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35(이현동), 57대)
- 3) 2016년 4월 6일 대구시 서구청 운수사업인가 – 운수 사업권 확보 운행 시작
- 4) 2016년 4월~2020년 11월까지 10회에 걸쳐 7개 법인택시에서 180대를
양도양수 현재 237대 운행
- 5) 등기사항 : 2016년 3월 10일 이상기 이사장 취임
2018년 3월 29일 이상기 이사장 사임
2018년 3월 29일 심경현 이사장 취임
2020년 3월 10일 심경현 이사장 중임
- 6) 주요표창 : 2016년 10월 15일 대구시장 표창
2020년 3월 5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이사장 표창
2022년 3월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
- 7) 정기총회 : 1차 정기총회: 2017년 2월 28일 – 조합회의실
2차 정기총회: 2018년 3월 27일 – 대구교통연수원

3차 정기총회: 2019년 3월 29일 – 대구교통연수원
4차 정기총회: 2020년 6월 28일 – 대구엑스코
5차 정기총회: 2021년 4월 27일 – 대구엑스코
6차 정기총회: 2022년 5월 29일 – 대구교통연수원(예정)

주요 사업 / 활동

□ 최고의 운행률 – 99% 운행률

- 대구지역 법인택시의 평균 운행률(보유 택시 대수 대비 운행 대수 비율)이 약 40% 인 현실에서 본 조합은 설립 시 27명으로 출발을 제외하고 거의 100% 운행되고 있다.
- 조합원의 수익증가 및 만족도 증가로 탈퇴자 감소 및 가입 희망자 증가의 결과 운행률 99%

□ 사고율의 현저한 감소 –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법인택시 공제보험 요율

- 설립 시 법인택시공제조합 기준 200% 보험료율이 현재 90%로 낮아짐
- 자율적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현저한 감소의 결과

□ 최저의 운송 원가관리

- 운송원가와 차량 관리 : 주인의식 고취로 운행 대비 연료 소비가 최적화되고, 차량 부품도 순정품을 직거래하여 최적의 관리와 차량 청결을 통하여 승차감 최적의 상태를 항상 유지 관리함.

□ 봉사활동

- 지역 노인 무료 목욕 서비스에 무상 운송 봉사활동 및 지역 취약계층 요청 시, 무상 운송 봉사활동

□ 코로나 팬데믹의 극복

-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임 제한, 시간제한 등으로 승객이 감소되어 택시기업과 노동자들이 적자 상태로 운영 중인 현실 속에서도 본 조합은 카카오 콜, 한마음 콜과 협력하여 조합원의 운행률 유지에 최선을 다한 결과 코로나 기간 중에도 흑자 운영되고, 초기의 위기 이후 조합원의 수익이 크게 줄지 않음

□ 협동조합간 협동

- 대구지역 11개 택시협동 조합 중 최초로 설립된 협동조합인 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도하기 위한 노력 중이며, 전국 택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으로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다양한 문의에 성실히 상담에 임하여 향후 택시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중추적 역할과 택시업계의 혁신적 모델로써의 소명을 다하고자 함.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

규모화의 이익 추구

- 1) 조합원의 출자 참여를 통한 꾸준한 증차(10회 이상의 차량구매)와 조합원 확대로 규모화 실현
 - 택시 237대 보유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화된 택시운송업체
 - 2021년 대구시의 양도양수 금지 조치로 증차가 중지된 상황
- 2) 1대당 공동운영비의 현저한 감소 – 1대당 약 13만원
 - 임원(1명), 사무직원(3명), 정비(1명)으로 237대의 택시운수업 경영 – 조합원의 자율적 운행에 기반하고 경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가능
 - 정비 및 차량 부품 등 구매비의 최적화로 원가 절감 실현
- 3) 규모의 확장은 플랫폼 시스템의 택시 콜 업체와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아서 대구시의 양도양수 금지가 풀리면 증차를 통하여 현재 본 조합에 입사를 희망하는 대기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공동운영비 산출도 낮춰나가서 조합원 수익증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조합원의 수익증대가 질 좋은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임.

협동조합택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창출

- 각종 언론에 출연 – 협동조합택시의 우수성과 운영 사례 제공
- 조합원의 서비스 교육, 복장 통일 등

경제적 성과 : 부채 없는 안정적인 협동조합, 운행수익 대비 조합원 수익 극대화

- 매출의 증대는 조합원의 수익증대
-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대함.

(단위: 백만원)

연 도	2016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 출	2,944	5,586	5,774	6,906	7,790	8,490

- 재무관리 – 부채 없는 협동조합
- **대구광역시 택시업체 경영평가(2019년, 2021년) – 89개 업체 중 82.72점으로 1위**
- 조합원 잉여 배당 실현

(단위: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정
배당금	46,187,000	23,700,000	25,253,350	23,700,000
복리비		인당 100,000	인당 100,000	
코로나 지원금		인당 300,000	인당 100,000	

- 법정적립금 적립 : 총 3,898,375원
- * 조합원의 수익은 개별차이가 크다, 하지만 동일 운행수익이 있을 때 주식회사 법인택시에 비해 원가 절감, 경영 효율성 향상(공제율 감소 등), 중간비용(자본가이윤, 노동조합 비용 등)이 없으므로 개별수익은 크게 증대되었다.

협동조합 내부 운영 사례

민주적인 기관 운영

정기총회

-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정기총회 – 약 7시간 운영(포상, 교육 포함)
- 20년, 21년 코로나 팬데믹에도 대구 엑스코 본관 그랜드볼룸 500인석 대여, 거리두기 지켜가며 진행
- 약 15개의 안건처리, 약 300페이지 자료집,



이사회

- 1) 월별 정기이사회: 매월 1회 정기이사회를 통하여 조합의 현안 의결

이사회	이사회 의사록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정관에 명시)	

감사

- 총회 전 일주일간 감사 실시 – 감사 수당 지급
- 특별감사 실시
- 21년 총회 시 이사장의 특별회계감사 실시 제안 – 창립 이후 5년간의 외부 회계 감사 실시
- 회계법인 태평양이 21년 9월부터 3개월간에 걸친 감사

조합원의 의문 사항 접수, 회계법인 선택도 조합원의 의견 반영
==> 감사 결과는 양호

○ 확대 간부회의 - 구성

-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전달하고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매월 정기회의 개최

○ 공개

- 이사회의 개최와 결과물 공개 – 의사록 및 회의 자료 공개

□ 규약 규정 재개정을 통한 민주적 운영

- 규약 – 대의원선출규약, 선거관리위원회규약, 조합발전위원회규약, 임원선거규약, 총회 운영규약,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약, 자문위원회 규약, 조합원 자격기준 규약, 조직 운영규약, 경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약, 과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약, 잉여금 배당 사무처리 규약, 현물 출자에 대한 규약, 출자금 감소 규약, 기금운영 규약, 예산회계규약, 고정자산관리규약
- 규정 – 상별(징계)규정, 복지회칙,

□ 복지회 운영을 통한 조합원 복지 실현

- 조합원 전원의 참여와 10,000원의 복지회비로 운영
- 조합원 친목 행사 – 19년 10월 설악산 여행 (180명 참여, 대형버스 6대)

야유회(19.10) - 버스 6대 180명 출발	야유회 즐거운 식사
	

- 산악회 등 자발적 소모임 운영

□ 조합원 교육

- 입사자 교육, 법정의무교육, 월별 정기교육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본 조합 운영 경과 사항, 안전교육, 보건교육, 안전 운행 및 서비스 정신 함양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협동조합 외부 협력사례

□ 대구경북, 전국 택시협동조합 협의회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

- 1) 대구경북 택시협동조합 협의회 설립 : 2020년 10월, 심경현 이사장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됨
- 2016년~2018년 – 택시협동조합설립지원과 정보교류
 - 2019년 4월~ 2020년 10월까지 – 대구지역 택시협동조합 대표자회의 참석(20회 이상 참석)
 - 택시발전법과 전액 관리제 대비 토론회, 임원 워크샵, 조합원 체육대회 (400명 참가) 개최
 - 2020년 10월 – 대구경북택시협동조합협의회 창립총회 – 심경현 이사장 회장으로 선출됨
 - 2021년 제 1차 정기총회와 매월 정기적인 대표자회의 개최(11회), 임원 워크샵과 발전토론회
 - 2022년 제 2차 정기총회 개최와 연합회 설립 의결, 조합원 체육대회, 공동차고지 등 준비 중
 - 현재 대구광역시 내 1,264대의 협동조합 택시 운행 – 법인택시의 22%

창립총회(20. 10)	정기 총회(21.1/ 22.1)
	
체육대회(19.10)	임직원 워크샵(21.11/ 20.6)
	 <p>구경북택시협동조합협의회 임직원 워크샵</p> <p>기간 11월 16일 오후 2시 장소 혁신성장비워크숍 주최 대구경북택시협동조합협의회 후원 대구광역시 연락처 주관 대구경북택시협동조합협의회 대구경북택시협동조합협의회 웹사이트</p>

- 2) 전국 택시협동조합 협의회 설립
- 전국택시협동조합 1차 간담회 – 소셜캠퍼스온 충남(11개 조합 참여)
 - 전국택시협동조합 2차 간담회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26개 택시협동조합 참여)
 - 전국택시협동조합협의회 설립 – 초대 회장으로 심경현 이사장 선출

- * 전국 85,000대 법인택시의 택시협동조합으로 전환 준비 중
- 현재 68개 택시협동조합 운행 중이며, 약 3,500여 대 협동조합 택시 운행 중



3) 제도 개선 관련 활동

- 협동조합 기본법과 택시발전법, 운수사업법의 부조화로 인한 제도개선 과제 제기
- 대구시의회 방문, 국회의원 추경호 사무실 방문,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과장과 면담 등

대구택시사업조합(89개업체 참여)에서의 주도적인 활동

- 대구택시사업조합 이사로 선출되어 이사회 활동
- 대구택시사업조합 정관개정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협동조합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

1) 택시협동조합 설립지원

- 택시협동조합 대구형 사례의 본거지 – 사례를 청취한 후 설립
- <경기도> 용인 블루인택시협동조합(2022. 02. 24.) 이사장 : 오경화
- <제주도> 제주법인택시협동조합(2022. 02. 03.) 이사장 : 고웅준
- <대전> 모두택시 협동조합(2022.02.16.) 이사장 : 김성태

2) 대구지역 협동조합네트워크 준비 조찬간담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미래포럼 발표 및 참여
- 조찬간담회 적극 참여
- 학교 협동조합 탐방 차량 지원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과의 협력적인 경영

- 카카오 콜과의 업무협약
- 대구정비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
- 참빛 한방병원, 허병원과의 업무협약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 인생이모작 – 시니어의 자유롭고 행복한 일자리 창출
 - 평균연령 63세, 55세 이상 노무조합원(181명)

 - 1) 법인택시의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택시업계를 떠났던 근로자를 협동조합의 근로자조합원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 인생 이모작으로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취업한 조합원의 의견)
 - 2) 지역 노인 무료 목욕 서비스와 무료 운송 서비스 제공
 -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 및 운영 관련 상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상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전문 상담창구 운영을 고려 중 임.
 - 4) 본 조합 운영 사례를 후발 택시협동조합들과 공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택시협동조합 협의회 설립에 선도적 역할.
-
- ### 위기 극복 사례
- 신뢰의 위기
 - 협동조합 운동을 이끄는 선구자들의 신념과 열정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속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바람직하고 훌륭한 조직으로 실체를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극복되기 시작한다. (레이이들로 보고서)

 - 1) 문제의 발단 – 협동조합은 설립하였으나 기본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식회사 법인 운영방식으로 운영됨. 방만 경영과 소통 부족, 민주적인 절차 무시, 경영에 대한 공개 미진 등이 쌓여 임원진에 대한 불신의 폭이 증가함
 - 2) 2017년 8월 16일 초대 이사, 감사 해임총회

불별더위에 에어컨 없는 총회장에서 120여 명의 조합원이 5시간 이상의 토론과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이사, 감사의 해임
 - 3) 2018년 3월 29일 초대 이사장의 해임총회와 심경현 이사장 선출
 - 4) 2018년 초순에 이상기 이사장이 경영 미숙으로 설립 초기 예비출자자의 출자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이상기 개인 통장으로 받아 유용한 사실과 증차과정에서 부당이익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8년 9월 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상기 이사장의 편취금액을 환수하고, 임시총회에서 공개 사과 후 사임하여 조합원 의결을 통하여 면책 찬성:79표, 반대:49표로 면책을 의결함으로 1년여에 걸친 조합원 파벌분쟁을 해결한 사례
 - 5)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토론과 의결에 참여했다. 그룹별로 분파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조합원들의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관, 규약, 규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조직 운영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갈등 해결의 경험을 쌓았다. 이후 새로운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지며, 2019년 설악산 야유회를 정점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완전히 극복되었으며, 협동조합 참여에 대한 만족도와 자긍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코로나 펜데믹과 경영의 위기

- 1) 2020년 3월 대구를 덮은 코로나19의 확산은 시민의 이동을 어렵게 했고, 연세 많은 조합원을 일터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 조합 매출은 평소 대비 40%에 미치지 못하였다. 매출의 급감에 의한 조합원 수익의 급감 했다.
- 2) 대구지역 법인 택시의 기사들은 일거리를 찾아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으로 이직했다.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인가된 법인택시 5,656대이나 등록된 택시기사는 3,700명(현재)을 넘지 못하고 있다.
- 3) 위기의 대응은 그동안 축적한 사내 유보금으로 인센티브형 긴급자금을 지급하고, 배당 등을 실시하는 것과 상호 간 위로와 조언으로 조합원 연대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하여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카카오 콜의 업무협약과 확대 등으로 수익률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
- 4) 조합 재무관리의 위기는 없다. 부채가 없다. 조합원의 수익감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제만 있다.

혁신 사례

대구형 택시협동조합 운영 모델

- 경영의 안정성이 대단히 높다. 부채없는 협동조합이다. 3,000만원에 달하는 출자금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도 명확하다. 자조에 기반한 자립한 개인들의 협동조합 연대 모델이다.
- 재무설계는 총회를 통해 의결된다. 충분한 정보공개에 기반한다. 카드수수료 비용이나 카드포인트 수익까지 공개된다. 공동운영비를 어떻게 설정하고, 미래 위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총회의 핵심 이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의 법인 사용 또는 장애인에게 배분의 문제는 토론의 주제였다.
- 자율에 기반해 운행한다. 1인 1차제로 담당 차량을 관리한다. 관리주체의 애정으로 차량은 언제나 완벽히 관리된다. 별도의 관리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내근 임직원 5명이 237대를 관리한다.
- 공동사업체로 함께 노력하는 부분에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사고율의 감소와 공제분담비율의 감소다. 사고를 냈던, 안 냈던 공제분담비율은 똑같이 부담한다. 우리 조합의 공동문제이다. 사고에 대해서 서로가 견제하고 감시한다.
- 구성원 간의 존중과 관계성이 높다. 협동조합에서 임원에게 선출되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커다란 영예이다. 이사-감사 출마자가 너무 많아 공탁금을 50만원 납부해야 출마할 수 있다. 이사장 출마는 200만원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 대구형 택시협동조합 운영 모델은 자율 운행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운영모델이다.
- 대구형 택시협동조합 모델은 구성원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모델이다. 이직률이 상당히 작다. 운행 수입대비 실수익률이 가장 높은 모델이다. 평균 운행률 40%를 훨씬 웃도는 택시협동조합의 99% 운행률은 전국 법인 택시 사업자와 노동자의 대안 모델이다.

- 협동조합의 자발적 참여, 자율적 조직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여 준다.
 - 택시발전법은 택시 기사의 난폭 과속운전,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 불친절 근절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협동조합 택시에서는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친절기사가 되려는 혁신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대구시민의 택시협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협동조합 택시와 함께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 성과 배분의 사례는 전파되어야 한다.
 - 정기총회 시 3년 무사고 5년 무사고 포상은 조합원의 기대이자 자랑이다.
 - 결산 이익금에 대한 법정 적립과 조합원 참여 배당은 조합원 권리이다.
 - 총괄 실무책임자로 내근직 차장으로 승진한 분은 여성이다. 95% 이상 남성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이례적이다.
 - 행정업무 능력과 조합원 소통 능력이 내부 승진의 근거였다.

[별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의 ‘택시운송사업자’에 택시 협동조합 예외 조항 적용 필요

2022.11.08. 택시협동조합

‘대구 택시, 협동조합으로 위가 돌파’ 2021년 1월 12일자 경제지 신문에 실린 택시협동조합 관련 기사의 제목이다. 9개 조합이 1,075대 운행하며 이는 법인택시의 24%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내용과 함께 기사들이 공동 출자해 수익을 공유하며 책임 운행으로 수입_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보다 월 70여만원 이상 많음과 만족도가 높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택시협동조합은 일반택시회사와 달리 일정한 업무만 조합원인 운수종사자에게 위탁받아 관리해 준다. 이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운수종사자들이 상호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인 운수종사자(피용자 또는 택시 노동자)가 운수사업자(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운수종사자(피용자 또는 택시 노동자)가 운수사업자(사용자)의 지위를 가져 정액관리 및 운송비용전가 원인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택시협동조합은 운수종사자가 공동 출자하여 함께 설립함.
운송종사자가 자신의 택시(또는 택시구입시필요한비용)를 출자하여 그소유권을 협동조합에 두어설립하고, 협동조합 탈퇴 시 출자한 모든 것을 반환받는다. 즉 택시협동조합은 운수종사자가 설립 창업자이며,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또는 택시)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운송종사자가 가지게 된다.
- 운송종사자는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자율적인 근로시간을 정함
운송종사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1인 1표에 의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협동조합의 경영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근로시간도 조합원인 운송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일정시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
- 택시협동조합 관리운영을 위한 제비용을 조합원인 운수종사자가 공동 부담
협동조합이 성과금이나 급여 형태로 정산하여 조합원인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운수종사자가 입금한 운송수익금 중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자신들이 공동 분담금으로 정한 소정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취득한다.
※ 다른 법인운수사업자는 성과금이나 급여 형태로 정산

택시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법법에 의거하여 회계자료 등 공개의무와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가 총회 등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경영 감독 및 권한 행사를 한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협동조합의 투명관리 및 합리적 경영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택시협동조합은 운수종사자들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기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과속운행 및 난폭운전 등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교통약자 배려 및 교통 봉사 등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하며 택시요금 인상이나 택시고급화 등으로 해결해 오던 택시문제 대부분을 운수종사자가 운수사업자의 지위를 통합적으로 가지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구 택시, 협동조합으로 위기 돌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택시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촉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택시협동조합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를 막는 등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전가금지 조항(제12조)* 등이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 및 적용되어 그 취지를 저해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 법인택시운송사업자는 모두 대상(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 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군 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적용 제외)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택시운송사업자와 주식회사 등의 일반택시 형태로 운영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택시 관련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및 택시발전법(운송비용 전가 금지)이 일괄 적용됨에 따라 올바른 택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택시협동조합은 운송비용 전가 발생 원인 자체가 없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 해소와 60세이상의 노령층 일자리 창출 및 생활 안정의 역할을 하고 택시의 올바른 발전을 가져오도록,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송수익금 전액관리’ 및 택시발전법의 ‘운송

비용 전가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용자-피고용자 관계가 아닌, 택시운송 사업을 함께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설립한 택시협동조합이 그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택시운송사업자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상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도'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적용 대상에 협동조합은 제외하거나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 필요

* 조치 필요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개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이하 현행과 같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생략)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부록_ 전국 택시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이름	소재지	대수
1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	서울	56
2	하림운수협동조합	경기(동두천)	30
3	동두천금강택시협동조합	경기(동두천)	50
4	미래희망협동조합	경기(동두천)	32
5	동두천시민협동조합	경기(동두천)	31
6	와이제이협동조합	경기(양주)	50
7	운수협동조합	경기(화성)	47
8	용인블루택시협동조합	경기(용인)	76
9	광일협동조합	경기(남양주)	60
10	우리미래협동조합	경기(과천)	43
11	평택희망협동조합	경기평택	49
12	하나협동조합	강원(춘천)	30
13	춘천희망택시협동조합	강원(춘천)	74
14	봄내택시협동조합	강원(춘천)	36
15	소양시민협동조합	강원(춘천)	45
16	강릉솔향택시협동조합	강원도(강릉)	30
17	국토정중앙택시협동조합	강원도(양구)	14
18	강릉시민택시협동조합	강원도(강릉)	30
19	원주시민협동조합	강원도(원주)	52
20	에스엠사천택시협동조합	경남(사천)	32
21	사천택시 협동조합	경남(사천)	19
22	100번택시협동조합	경남(사천)	22
23	더편한택시 협동조합	경남(창원)	53
24	창원협동조합택시	경남(창원)	46
25	시민택시협동조합	경남(창원)	39
26	한성협동조합 택시	경남(창원)	38
27	한진택시 협동조합	경남(창원)	42
28	조은택시협동조합	경남(창원)	34
29	원택시	경남(창원)	46
30	패밀리택시	경남(창원)	미운행
31	행복한협동조합택시	경남(창원)	?
32	남해남양택시협동조합	경남(남해)	13
33	무주택시협동조합	전북(무주)	7
34	우리택시전주협동조합	전북(전주)	50
35	우리목포택시 협동조합	전남(목포)	65
36	충평택시협동조합	충북	56
37	제주법인택시협동조합	제주	미운행

(계속)

	협동조합이름	소재지	대수
38	우리무안택시협동조합	전남(무안)	9
39	스카이 협동조합택시	전남(목포)	52
40	목포낭만협동조합	전남(목포)	23
41	여수관광택시협동조합	전남(여수)	30
42	한국택시광주 협동조합	광주	56
43	네오택시협동조합	대구	253
44	달구벌협동조합택시	대구	95
45	대구택시협동조합	대구	237
46	드림택시협동조합	대구	109
47	미소택시협동조합	대구	69
48	운수대통협동조합	대구	54
49	제일택시협동조합	대구	70
50	조일교통협동조합	대구	126
51	한국택시대구협동조합	대구	85
52	대기택시협동조합	대구	66
53	청구택시협동조합	대구	83
54	바른택시협동조합	대구	미운행
55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	경북(경산)	115
56	한국택시경주협동조합	경북(경주)	64
57	희망택시협동조합	경북(경주)	47
58	한국택시구미협동조합	경북(구미)	93
59	제일택시협동조합	경북(상주)	26
60	울진택시협동조합	경북(울진)	9
61	한국택시포항협동조합	경북(포항)	48
62	의성삼성택시협동조합	경북(의성)	12
63	울릉택시협동조합	경북(울릉)	14
64	울진동해택시협동조합	경북(울진)	13
65	평화택시협동조합	경북(예천)	39
66	봉화택시협동조합	경북(봉화)	27
67	대게택시협동조합	경북(영덕)	16
68	진흥기업 협동조합	대전	47
69	우리희망 협동조합	대전	35
70	독립택시 협동조합	대전	33
71	보령운수협동조합	대전	67
72	모두택시협동조합	대전	39
73	모아택시협동조합	대전	미운행
74	해오름 교통협동조합	울산	42

기념포럼 1세션
[협동조합이 쏘아 올린 변화의 신호탄]

사례발표

심형진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기후위기 시대, 협동조합의 도전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심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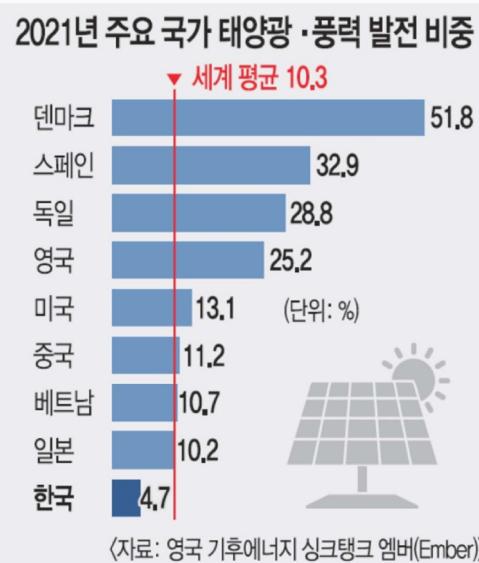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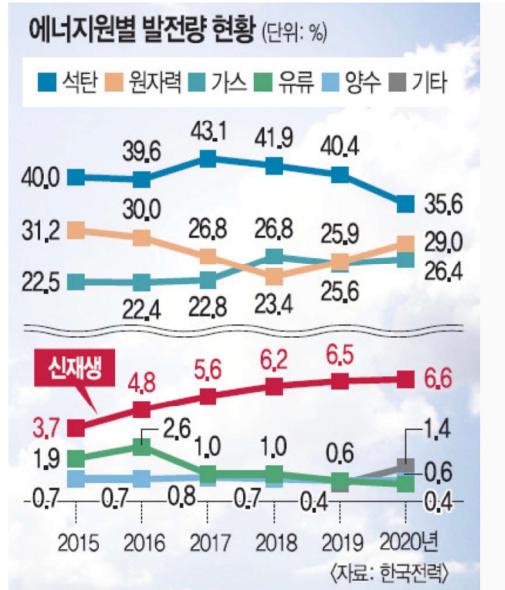
재생에너지 설치

화석연료를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5년간
1.78배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비율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12년 12월 출범
2013년 5월 안산시 호수동 중앙도서관 옥상에 제1호 발전소 준공

지역협동조합, 시민단체, 지역에너지절약 추진단체 노동조합 14개 참여
121명 조합원 9천만원을 출자해 1호발전소 건립

(재)안산환경재단, 남부두레생협,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안산지부,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 시회호생명지킴이,
인산ICOOP생활협동조합, 인산환경운동연합,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원신용협동조합,
안산YWCA, 에버그리너협회, SJM노동조합,
호수동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협의회,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2022년 06월 기준, 41호기까지
건설 운영 중
(누적 4,349kW급 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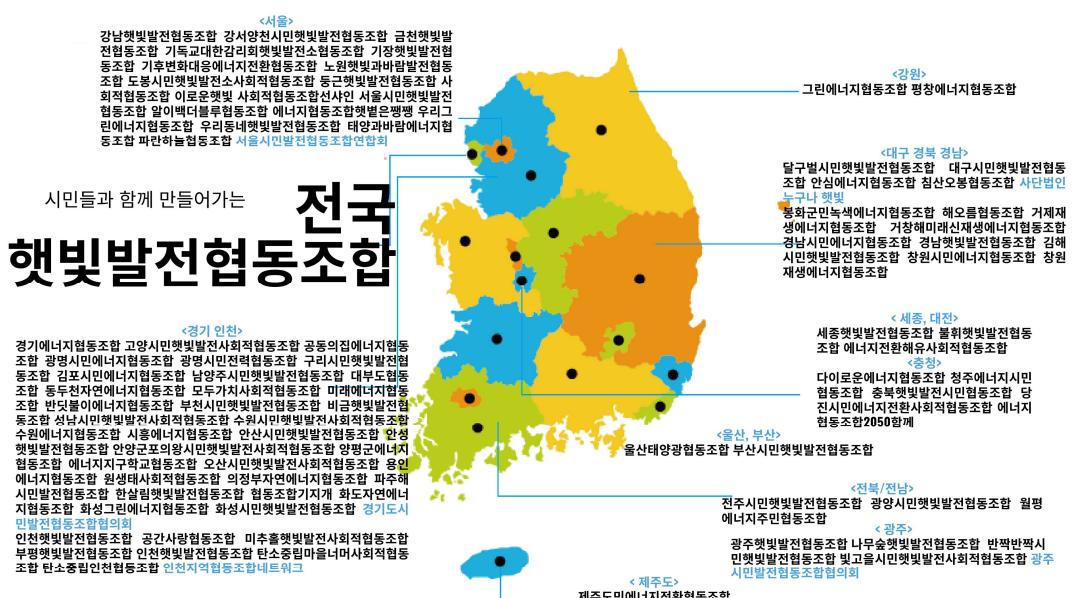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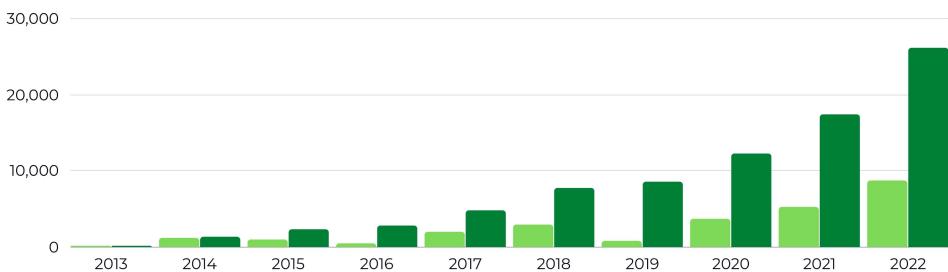
안산시민햇빛발전소 1호기(호수동 주민발전소) 준공 기념식

안산시민햇빛발전소 1호기(호수동 주민발전소) 준공 기념식

위치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고진동)
설비용량	30 kWp
면적	약 169㎡
준공일	2013.05.21

태양광발전소(220개, 설치규모: 약 27MW)

시민들과 공공기관 옥상과 주차장, 환경시설, 체육관, 학교, 종교시설, 생산시설에 태양광발전소를 올려 탄소중립 실천 전국 협동조합들이 10년간의 경험들을 공유해 불합리한 제도들을 고쳐나가고 지속 가능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꼼꼼하게 유지관리 그리고 협동조합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1MW의 발전소 설치는 물론 자전거 도로와 폐철도 부지 등 대규모 발전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 목표

에너지 협동조합

1,000개

조합원

300만명

발전소 규모

3GW

연대의 힘으로



에너지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역할과 잠재력

01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도개선 요구

02

생태계 활성화 기반마련

녹색금융
지원체계 마련

03

연대의 힘

상생협력 기반 마련

시민이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에너지

함께 모으고, 함께 나누고.....

에너지협동 조합의 가치와 의미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장을 마련함



공공 에너지 자산화

재생에너지 지역 기반구축



재생에너지 인식개선

수용성확대



이익공유

공정한 분배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김포에너지시민협동조합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의정부 호원동 테니스장 (500kW)



수원시민햇빛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 동부버스 공영차고지 (820kW)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598.845kW

빛고을
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총사업비 8억

광주시민 2억원

광주시 2억원

금융기관 4억원

도로 법면, 자전거도로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제2자유로 법면 499.8kW)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시화호 수변 자전거도로 1MW)

RE100 CLUB

RE100 시민클럽

RE100 가입 기업

RE100 Citizen Club banner featuring three stylized figures running with solar panels. Below the banner is a grid of logos for various companies that have joined the RE100 initiative. A group photo of people holding white t-shirts with the RE100 logo is shown in front of a banner.

RE100 Citizen Club banner featuring three stylized figures running with solar panels. Below the banner is a grid of logos for various companies that have joined the RE100 initiative. A group photo of people holding white t-shirts with the RE100 logo is shown in front of a banner.

RE100 시민클럽은

<p>☞ 시민이 주체</p> <p>기업이나 국가가 주도하는 기존 RE100 캠페인과 달리 활동 주체가 시민이다.</p>	<p>☞ 시민들의 모임</p> <p>모든 시민들이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이며 탄소중립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임이다.</p>
<p>☞ 자발적 캠페인</p> <p>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시민 개개인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 가능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실천하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캠페인이다.</p>	<p>☞ 시민들을 발굴하고 인증</p> <p>재생에너지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이미 설치하여 RE100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을 발굴하고 인증한다.</p>
<p>☞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제시</p> <p>참여한 시민들에게는 가정용 햇빛발전 설치, 에너지 협동조합 참여, 재생에너지 관련 펀드 정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RE100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p>	<p>☞ 시민캠페인 지원 정책 제안</p> <p>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고 RE100 시민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이다.</p>

이제, 선언을 넘어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기념포럼 2세션
[협동조합의 도전, 미완의 퍼즐, 미래의 상상]

주제발표

김아영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

2022년 12월 1일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교수
김아영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협동조합기본법 10년의 성과

- 한국 경제발전과 함께 변화해온 협동조합의 성과: 생산, 부가가치, 고용
 - 협동조합의 한국 경제 발전단계별 기여: 개발도상, 중진, 선진경제
- 기본법 이후 설립 증가로 양적성장
 -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 지표 개발 필요
- 질적성장, 기존 협동조합 정체성 재인식 기회
 - 기존 협동조합(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생협 등) 스스로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

협동조합의 목적

- 협동조합 기본법의 1조(목적)
 -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통합: 사회적가치, 사회정책
-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경제적가치, 중소기업정책, 소상공인정책

3

협동조합의 도전

- 협동조합은 사회적가치 창출하며, 시장경쟁력을 갖춘 사업체로 발전하고 있는가?
- 협동조합의 협력 파트너는 누구인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협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는가?
- 협동조합은 자조조직(공동소유/이익)이면서, 정부 지원(사업체 경쟁력)을 받으면서, 시민사회의 공감(협동조합 지원 정당성)을 얻고 있는가?

4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

- 대한민국의 국가 성격은 1960년대 이후 변해왔다.
 - 발전국가에서 규율국가로
 - 국가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지원, 육성, 규율하는가?
 - 협동조합 지원의 정당성과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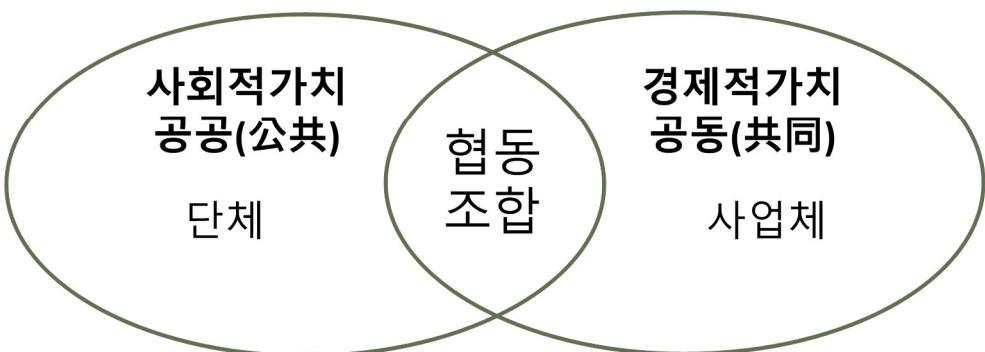
5

협동조합의 성격

- 하이브리드(복합체)
 - 사업체(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결사체(공동체, 시민사회단체 등)
-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일반, 사회적) 사업체는 규모와 성격으로는 중소기업사업체와 소상공인

6

협동조합의 복합 정체성



7

협동조합의 복합 정체성

▪ 단체

- 지원대상인 시민사회단체
- 사회적경제/비영리부문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 사업체

-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체
- 시장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공동사업체

8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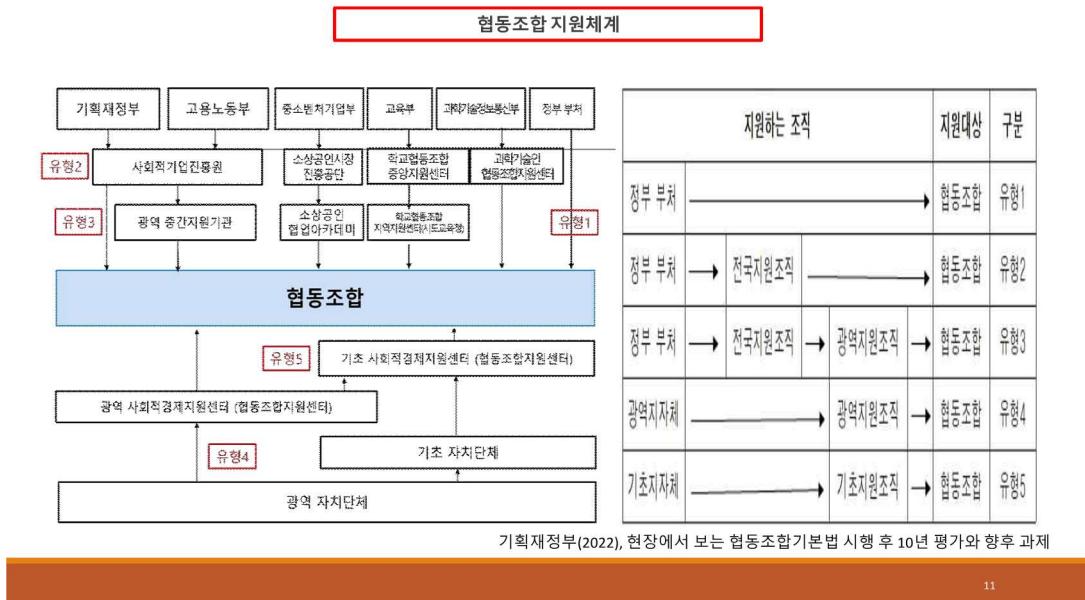
- 협동조합 기본법의 일반협동조합은 중소/영세사업체
- 기본법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정책 대상이고, 정책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필요

9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언

- 협동조합 기본법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과 실행 전략 필요
- 협동조합 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
 -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지원 관점에서 통합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
- 정책 및 제도변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 법: 협동조합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법 개정 방향과 내용
 - 기재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과 지원: 협동조합,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통합적 경제정책으로 지원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과 지원: 협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과 통합적 사회정책으로 지원

10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언: 지원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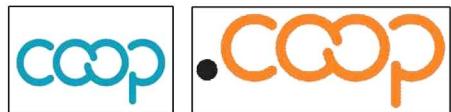
■ 정부의 담당 조직

- 정부는 지원과 감독: 국가/정부 역할은 직접육성지원+사후감독(규율국가)
 - 사회적경제 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는 국/과 업무 조정, 그리고 협동조합과 유지 및 신설
 - 기재부에서 정책조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부처에서 지원 및 관리, 지자체에서 직접지원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언: 정체성 강화

▪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 정체성 강화 방안: 임직원(대표자와 상근자) 교육과 협동조합 거버넌스(이사회) 개선
- 협동조합 마크와 인터넷주소 사용



13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언: 역량 개발

▪ 협동조합기업가와 혁신기업가 육성

- 조합 리더(비상근 이사장)와 경영자(상근 직원) 육성, 선발, 개발, 보상, 평가 등 인력개발

▪ 협동조합의 ESG(사회적책임) 공동 실행

- 협동조합은 기업시민으로 책무 수행

▪ 협동조합 정체성에 기반한 조직문화 개발

- 기업시민, 이해관계자관리, 사회적 책임, 조합 정당성

▪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공동사업모형 창출

- 조합원 이해관계와 능력에 걸맞는 공동사업(구매, 판매, 물류, 인프라공유 등) 실행

14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언: 정책

- 협동조합정책과 중소기업정책
 -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의 상호 협력과 조정
 - 중소기업 관점의 협동조합 정책
- 개별 정책과 통합 정책
 - 산업/업종별 정책과 조합별 정책
 -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전체 관점 조정한 통합 정책
- 통계: 조합과 조합원 전체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15

사회적경제와 함께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제도논리(민주, 평등, 공정, 연대)와 가치창출을 위한 경제제도논리(자조, 자기책임, 혁신)를 함께 하며 발전해야 한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신의 가치(공동이익)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민경제를 위한 사회적 가치(공공이익)를 창출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실증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16

감사합니다

기념포럼 2세션
[협동조합의 도전, 미완의 퍼즐, 미래의 상상]

사례발표

이두영
청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2022
청년협동조합
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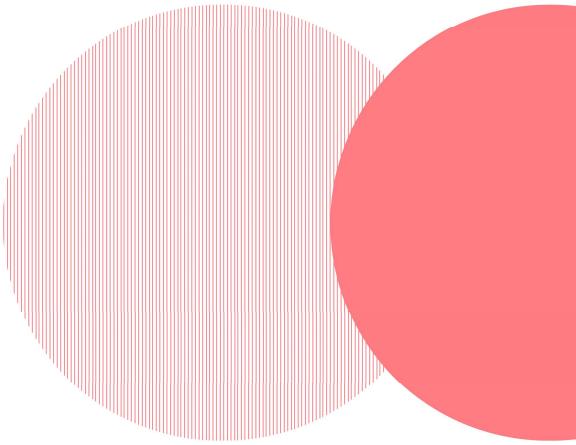
청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두영



한국 사회에서 주목같은 청년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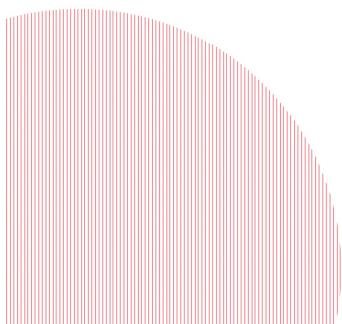
◆ 청년협동조합연합회

Korean Youth
Secondary
Cooperatives



2022
청년협동조합
연합회

-



- 01.** 청년의 고민은?
- 02.** 목적
- 03.** 청년협동조합 정의
- 04.** 청년협동조합 현황
- 05.** 청년에게 협동조합이란
- 06.** 청년에게 선배협동조합이란
- 07.** 협동조합에게 미래란

◆ 청년협동조합연합회

01.

청년의 고민은?

청년의 고민은?

취업 인간관계
돈 미어 결혼 창업 주거
진로적성 노후 예애 가족

청년의 고민은?

취업 인간관계 돈 결혼 창업 진로적성 노후 흥미 가족 주거

02.

목적

목적

-

청년 X 협동조합

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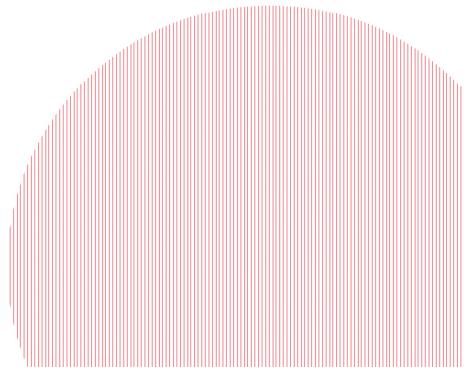
청년협동조합 정의

청년협동조합 정의

· 청년협동조합의 기준

청년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협동조합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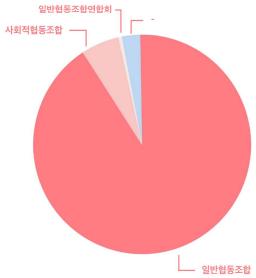
- ① 청년이 조합원인 협동조합(만 39세 이하 비율이 과반)
- ② 청년이 임직원인 협동조합(만 39세 이하 비율이 과반)
- ③ 청년이 대표자인 협동조합(만 39세 이하)
- ④ 청년을 핵심고객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04.

청년협동조합 현황

청년협동조합 현황



※ 출처 - 청년협동조합 실태조사, 2021년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청년협동조합 현황

업종	합계	백분율
건설업	8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	0%
교육 서비스업	70	19%
국제 및 외국기관	3	1%
농업, 어업 및 임업	11	3%
도매 및 소매업	60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	4%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3	6%
숙박 및 음식점업	21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3	14%
운송업	3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	4%
제조업	26	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	9%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7	5%
-	3	1%
TOTAL	371	100%

※ 출처 - 청년협동조합 실태조사, 2021년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청년협동조합 현황

지역	합계	백분율
서울	169	46%
경기도	38	10%
인천	5	1%
부산	12	3%
대구	6	2%
대전	12	3%
광주	12	3%
울산	4	1%
세종시	4	1%
강원도	7	2%
충청남도	15	4%
충청북도	6	2%
경상남도	20	5%
경상북도	15	4%
전라남도	20	5%
전라북도	18	5%
제주도	8	2%
TOTAL	371	100%

※ 출처 - 청년협동조합 실태조사, 2021년 청년협동조합연합회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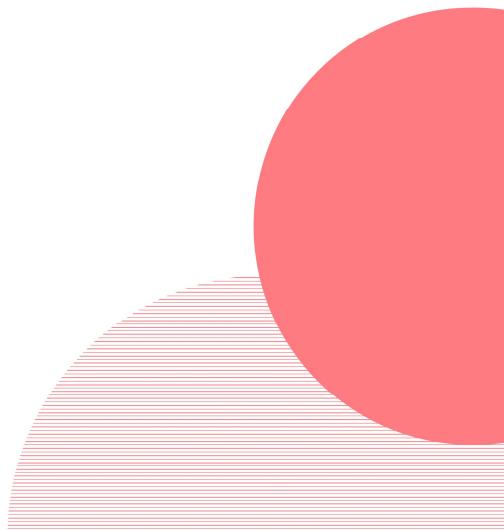
청년에게 협동조합이란

청년에게 협동조합이란

· 소비자로서의 협동조합과 공급자로서의 협동조합의 관점이 완전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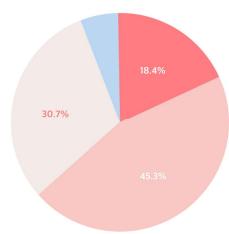
생산자가 대하는 협동조합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음

소비자가 대하는 협동조합은 잘 알지는 않더라도 나름 인지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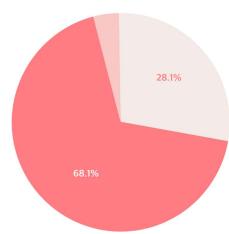
청년에게 협동조합이란

① 협동조합에 대해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 7,065개)



- 잘 알고 있다. (의미와 사례를 모두 알고 있다.)
- 알고 있다. (의미 또는 사례를 알고 있다.)
- 들어본 적 있다.
- 전혀 알지 못한다.

② 협동조합은 귀하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응답 7,065개)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출처 - 협동조합 진단, 2022년 협동조합 가치공유연구소(표본: 7,065개, FGI: 5개 그룹)

청년에게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낮음

청년에게 협동조합이란

· 기존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결사체를 중심으로 1인 1표에 대한 이야기만 중심이 되었음



협동조합에 대한 매력 및 호감 낮춤

06.

청년에게 선배협동조합이란

청년에게 선배협동조합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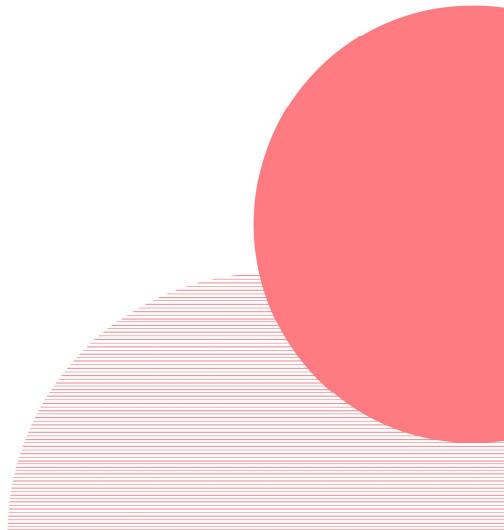


선배가 많지만 협동조합을 **제대로 알려줄만한 선배**가 많지 않음

청년에게 선배협동조합이란

- 한국 사회에서 세대론에 관련된 맥락과 달아 있음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
청년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음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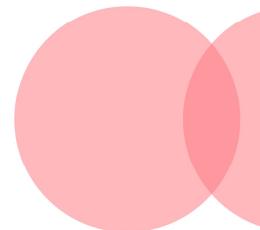
협동조합에게 미래란

협동조합에게 미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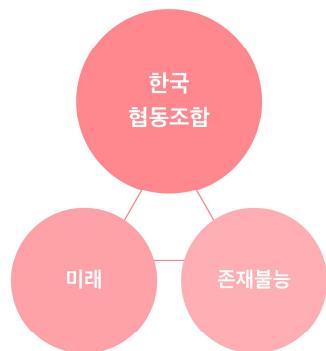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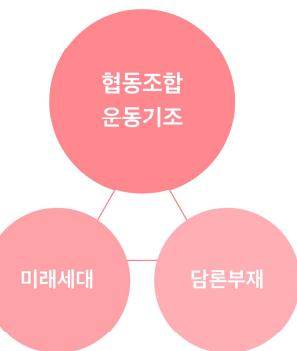
- 과거 협동조합 운동 자체가 중심이 되던 관점에서 탈피



협동조합을 하는 이유가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이
자본기업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전파하되
원칙적인 교육이 아니라 현장 및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함



협동조합에게 미래란



감사합니다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협동허브



회장 이두영

02) 581-3337 / 010-3092-2020
bijoushine@coopvsc.com
kyscoop@gmail.com

기념포럼 2세션
[협동조합의 도전, 미완의 퍼즐, 미래의 상상]

사례발표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금기의 영역에 대한 도전, 금융과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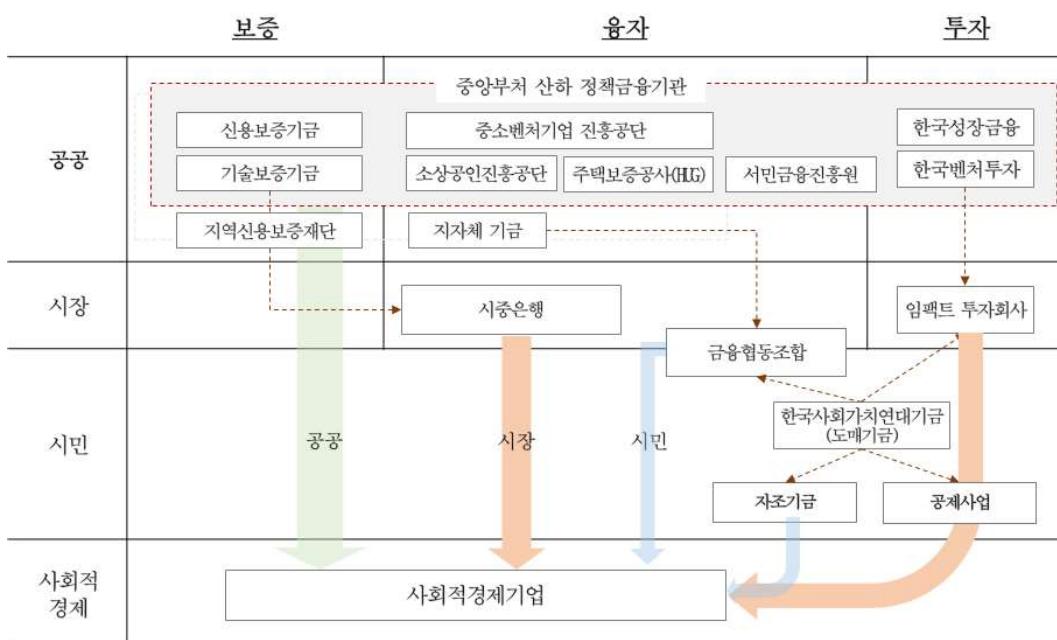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이상진 대표

2022.12.01.

1. 사회적금융의 한계와 사회연대신협 추진

금융거래는 여유 자본에서부터 시작되기에 금융상품은 자금공급자의 자금운용 목적과 기대 수익률을 반영하여 설계되기 마련이다. 가령,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설계하는 펀드는 투자자의 수요에 따라 투자 범위, 기대수익률, 펀드 기간 등이 결정된다. 은행의 자산 운용전략 및 대출 포트폴리오도 자금 조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금융시장은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금융거래의 속성이 결정되는 자금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다. 금융기관은 자금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제공한 후, 일정 기간 이후 자금을 회수하여 자금공급자에게 이익을 배분하고 수수료를 중개자일 뿐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는 자금공급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18년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발표 이후, 사회적경제에 자금이 공급되는 채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53> 한국 사회적금융 구조도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 정책자금은 시장이 부담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 및 지역에 자금 공급이 유연하기 때문에 포용성이 높은 편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 변동성이 커서 지속성

이 떨어진다. 2022년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 정책자금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온 사회적금융협의회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영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그렇다고 정책자금이 민간 투자자 유입을 크게 확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018년 발표한 공공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했던 사회적금융 활성화정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시장은 조달 및 운용하는 자금규모가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높을지라도 이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본질적이 속성으로 사회적금융에 소극적이며, 공공의 지원이 없다면 오늘날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었다. 그렇기에 가치지향성과 지속가능성은 한계가 있다. 여전히 일반 은행은 담보와 보증 없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하는 것을 꺼려하며, 소셜임팩트펀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에 투자가 불가능하다.

반면 시민이 조직화되면서 스스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면, 높은 수준의 가치지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첫째, 자조기금은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경제주체들이 자본을 조성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가치지향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조기금이 금융 사각지대를 메워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한 기업이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기대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조기금 현실은 운동성을 통해 독자적인 자본 축적으로 이루지 못했고, 공공 정책자금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이는 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기도 한다. 가령,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을 매칭한 경우,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했다. 자조기금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필요할 때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평가는 높지 않을 수 있다. 자조기금이 농산업의 의무자조금 제도처럼 운영되면서 지속적인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시민이 조직화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김종걸(2020)¹⁾은 시민들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당사자 의식과 그 성장을 돋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언급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실천적 경험에 대한 시대적 의미와 미래 변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으로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훈련 장소로 기능을 한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고, 구성원들에게 삶의 보람과 자부심을 생기게 함으로써 시민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시 전략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기업적 측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 행동의 거점(사회운동적 측면)으로 기능해야 하며, 시민들이 민주주의자로서 기본 소양을 배양하고 정치의 세계를 변화(정치적 측면)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정체성선언보고서에서 사회적 경제를 “시민들이 자발적 결사를 바탕으로 조직되고 구성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작동하며, 국가 및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켜나가면서 연대의 실천을 통해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가장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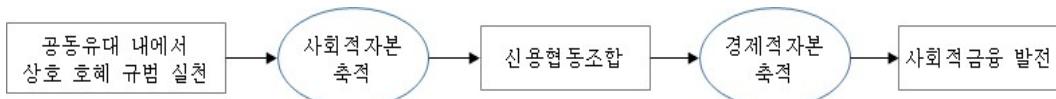
1) 김종걸. (2020). 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 북사피엔스.

부합하는 조직은 협동조합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에 따르면, 인류의 최소 12%가 지구상의 300만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한다.²⁾

이는 조합원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소유, 통제 및 운영하는 사람 중심의 조직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하나로 모은다. 조합원이 고객이든, 직원이든, 사용자이든, 주민이든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기업에 투자한 자본의 양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한다. 협동조합은 단순한 이익이 아닌 가치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행동한다. 전 세계 협동조합은 공정성, 평등 및 사회 정의를 기업의 중심에 두고 사람들이 함께 일하여 장기적인 일자리와 번영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시민들이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협동조합은 주주가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협동조합 활동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은 그들이 설립된 지역사회에 남아 있고, 생성된 이익은 기업에 재투자되거나 구성원에게 반환한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시민을 조직화하고, 자본주의적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힘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금융시장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시민이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신용협동조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동유대는 상호 호혜의 규범을 실천하는 민주주의 장으로서 시민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공동체 내에 사회적자본을 축적한다. 예금을 취급하는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제도 안에서 사회적자본을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시키면서 규모화를 이루는 수단이다.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은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면서 사회적금융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그림 154> 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 신용협동조합 의의



사회적자본의 경제적자본화를 통한 규모화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의 3가지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① 지급결제를 통한 자금 Pooling 가능

지급결제는 개인, 기업 등 경제 주체들 간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으로 자조기금이 수행하기 어렵다.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제한된 금융기관만 가능하며,³⁾ 자조기금도 지급결제

2) ICA 홈페이지 : <https://www.ica.coop/en/cooperatives/what-is-a-cooperative> (검색일 : 2022.11.19.)

를 위해선 이들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지급결제는 필수적으로 발생하기에 조합원과 조합은 거래가 빈번해 질 수 밖에 없고, 조합 계좌에 결제 자금이 머무르게 되면서 조합의 자산은 늘어나게 된다.

②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한 용이한 자본 축적

예금자는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신협에 예치한 자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예금보험제도란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여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뱅크런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해당 신협의 조합원은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에게 5천만원까지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금융기관으로서 규모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이다. 조합원은 운전자금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거나 목돈을 정기예금에 넣고 이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목돈 마련을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등 경제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③ 예금통화 창출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

신용창출이론에 따르면 은행은 기준자금 없이 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합원A가 신협에 100만원을 입금했다면, 신협은 지급준비금 10만원(지급준비율 10%)만 남기고 90만원은 이자 수익을 위해 조합원 B에게 대출한다. 조합B는 대출받은 자금으로 조합원 C에게 물건을 샀고, 조합원 C는 판매대금 90만원을 신협에 저금했다. 이때 신협의 자산계정에는 조합원B에 대한 대출채권 90만원, 부채계정에 조합원C 예금계좌에 있는 예수금 90만원이 계상된다. 실제 신협을 빠져나간 돈은 없지만, 신용을 통해 자산이 늘었다. 은행은 신규 예금 90만원에서 10%만 남겨두고 다시 대출하고 예금 수령을 반복하게 되면, ‘예금 / 지급준비율(%)’ 만큼 장부상 예금이 늘어난다. 지급준비율 10%라면 10배, 5%라면 20배로 예금과 대출이 증가한다. 이 경우 초기 조합원A가 예금한 100만원을 본원적 예금이라 하고, 장부상 새로 생긴 900만원은 파생적 예금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신협은 예금을 취급하지 못하는 자조기금 등 그 어떤 사회적금융 수단보다 강력하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시민 주도 사회적금융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IMF 이후 신협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신협은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 유지보다는 금융기관으로서 안전성과 건전성에 집중해야 했다. 이태영⁴⁾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신협 외부에서는 신협이 협동조합은행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기대가 있었으나, 소수 지역신협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아울러 금융협

3) 최근 이동통신회사, 모바일기기 제조업체, 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업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4) 이태영. (2021). 금융협동조합 규제체계 개편과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동조합이 공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의 주체로서 사회적금융을 선도하는 협동조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조합이 사회적금융이 주체가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조합 이사장과 이사회, 직원들이 바뀌어야 하고 오랜 시간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이 바뀌어야 한다. 이 사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되기에 조합원의 반발을 무릅쓰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이 상실된 현실에서 조합원들의 편익을 훼손하면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다.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사자들이 새로운 신협을 설립한다면 신협운동의 정신을 옮바로 계승하면서 소기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꿈꾸며 2020년에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사회연대신협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는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을 공동유대범위로 하는 단체조합으로 연대회의 회원을 공동유대의 범위로 정하고 있었다.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으로 구분되는데, 공동유대에 따라 설립에 동원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다르고, 자조, 자립, 협력이라는 신용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은 같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침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나타난다.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은 1960년 5월에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설립한 부산 메리풀 병원의 성가신용협동조합으로 단체조합이었다. 주익현(2018)⁵⁾은 단체조합은 조합원 모집은 교인이나 회원으로 한정해야 하기에 자원획득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불리함이 있어 설립이 줄고 소멸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업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덜하기 때문에 신협 운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사자들은 자조(自助)적으로 자본을 형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금융상품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및 그 종사자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신협이 필요하다. 기존 신협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해, 시민이 조직화되면서 사회적금융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한, 공공과 시장의 사회적금융을 이끌어가면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전 사회연대신협 이사장)

사회연대신협에는 예금통화 창출을 통해 자금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며, 사회적경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했다. 사회연대신협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사회적경제 대규모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개별 사회적경제기업과 그 종사자들의 예금을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장기적으로 사회적은행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윤리성과 사회성을 갖춘 모범적인 사회적금융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5) 주익현. (2018). *한국신용협동조합의 조직생태학, 1960~2016 : 설립, 성장, 소멸의 역동성*[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2. 사회연대신협의 비전

데자르댕 연대경제금고 이사장 게리 라부라(Garry Lavoie)는 사회연대신협의 출범은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지형이 매우 역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Pierre-Olivier, 2021, p.9)⁶⁾. 사회연대신협은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를 기반을 협동조합형 사회적은행을 설립하고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었던 신협운동이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모여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동조합형 사회적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공동유대로 단체신협 설립을 추진했다. 2021년 7월 3일 사회적적경제박람회 기간에 광주광역시 훌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했는데 169명의 설립동의자 중에서 97명이 참석해 정관과 임원, 사업계획 등의 승인했다.⁷⁾ 현장에는 국회의원 2명,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신협중앙회 이사, 신협중앙회 이사, 광주웨슬래신협 이사장,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자활기업 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⁸⁾,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윤이 영업의 중심에 있는 시중 금융기관들의 대안으로서 캐나다의 데자르댕과 밴시티 신협, 이탈리아의 방카에티카, 독일 GLS 은행과 같은 해외 유수의 사회적금융기관처럼 사회연대신협이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고 사회적가치가 더욱 많은 결실을 맺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⁹⁾

하지만, 창립총회 이후 신협중앙회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동유대와 잠재조합원 자격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2022년 8월 31일, 서울 종구 공간채비에서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할 때까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단체조합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및 종사자들의 활동했다.¹⁰⁾

연대회의 상임이사가 2021년 3월 연대회의 정기 총회 이전에 회원단체에 보낸 ‘사회적경제제안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우리는 코로나19란 위기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사회적금융은 공적자금 지원을 넘어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협상력을 키울 수 있음을 사회적경제 역사에서 확인해왔다.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한계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스스로 수신을 통해 자금을 모아야 한다.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가치를 만들어내는 금융이 보다 강력하게 작동해야 하며, 지역·업종·부문을 뛰어 넘는 연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사회적은행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에는 연대와 협동을 통해 금융을 만들어온 신용협동조합의 경

6) Pierre-Olivier Maheux. (2021). 데자르댕 연대경제금고의 역사, 존재의 열정. (번역협동조합역). 착한책가게.

7) 조현경. (2021.7.5.). 사회적경제인들 주도, ‘사회적은행’ 주춧돌 놨다.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2263.html.

8) 박유진. (2021.7.3.). 민형배 의원 "사회연대신협 설립 인가 나면 잔치하자".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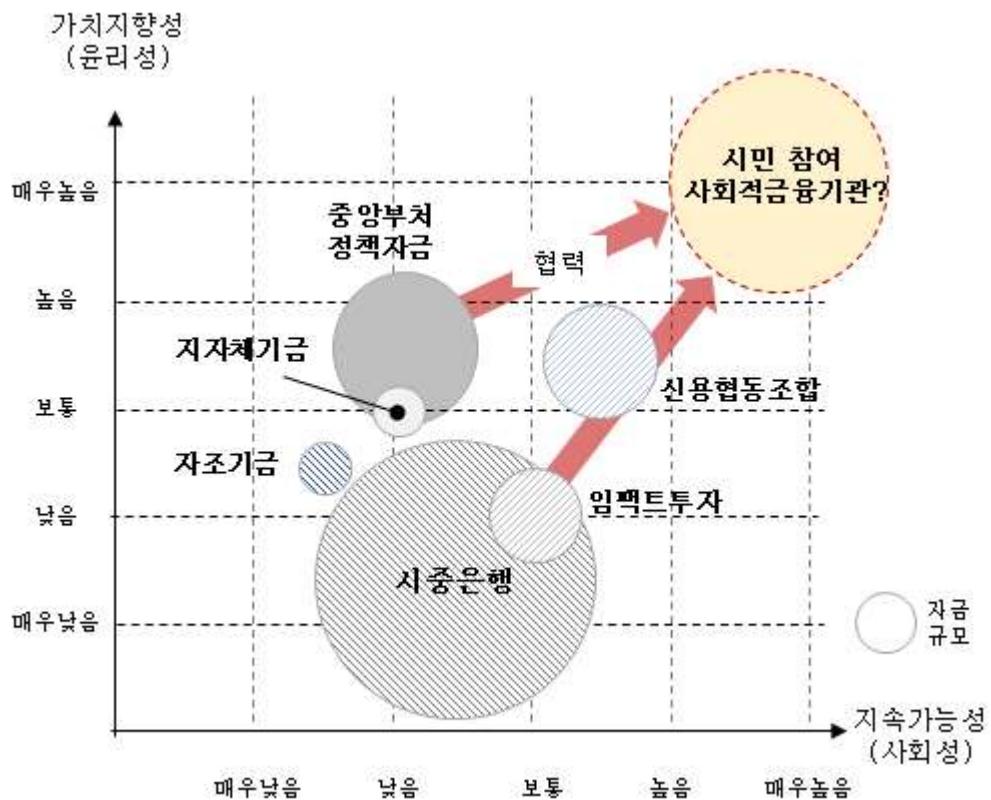
9) 이진백. (2021.7.5.). 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 성황리에 창립총회 개최. 라이프인.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692>.

10) 박유진. (2022.9.2.) 문도 못 열어본 사회연대신협...결국 해산.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9520>.

힘이 있으며, 사회적은행으로서 가장 민주적인 금융조직인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사회연대신협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리드해 가는데 핵심적인 금융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림 155> 향후 사회적금융 생태계



3. 사회연대신협 추진과 시사점

사회연대신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이사회와 금융당국¹¹⁾은 1년 이상 공동유대 적정성, 잠재조합원 규모 적정성, 사업타당성이란 관점에서 상반된 입장을 설득하고자 했다. 법리해석에 있어 다툼의 여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사회연대신협을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연대회의 및 산하단체들의 상호 밀접한 관계에 대한 가치판단을 위해 사회적 관계를 살펴봤다.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으로 오프라인 지점 수익률이 악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워지는 경제적 환경을 손익추정시 반영하고자 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환경과 연계하여 사회연대신협의 설립 명분을 설명하고자 했다. 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은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환경을 고려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11) 신협중앙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소통해왔던 사회연대신협 이사회는 인가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지고 있으나, 신협중앙회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 5가지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단체신협 설립인가 관련 5가지 쟁점

No	분석할 쟁점	인가 조건
1	연대회의 정관에 의한 회원만 조합원인가?	공동유대 및 조합원 자격 적정성
2	단체신협의 공동유대는 광역으로 제한되어야 하는가?	
3	잠재조합원 1,000명의 조건을 충족하는가?	잠재조합원수 적정성
4	조합원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위험은 없는가?	
5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서 수립이 가능한가?	사업계획 타당성

출처 : 필자 작성

① 공동유대 및 조합원 자격 적정성

법무법인과 함께 공동유대와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한 사회연대신협의 주장이 관철되는 듯 싶었다. 하지만 신협은 쟁점에 대한 법리 다툼을 인가권자의 정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이전시켰는데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에 대한 해석이 그것이다. 신협중앙회에게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는 효율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토대로서 보다는 비조합원 대상 무분별한 예금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의 틀로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신협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공동유대는 대출자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성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조합원 상호간에 대출상환을 강제하도록 규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협이 낮은 대손율을 보이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IT 기술 발달, 저비용으로 소비자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정보 수집·제공하는 신용평가사 출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등으로 외부 환경이 변화되었다. 이젠 내부통제수단으로 공동유대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오히려 교통 발달, 도시화로 생활권이 확대되고, 모바일뱅킹이 주요 채널이 되고 있기에 조합원의 편의성을 위해 공동유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용협동조합에는 지역조합 이외에도 직장조합, 단체조합이 있는데 이들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는 조합이므로 영업이 행정적인 지역으로 구분되기 어렵다. 과거 설립된 직장신협, 단체신협은 현재 실질적인 복수 개의 공동유대를 허용하고 있다. 가령, 직장신협인 국방신협은 국방부가 소재하는 전국에 걸쳐 있고, 직능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신협 중 다수는 복수 개의 광역에 걸쳐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에 지역을 언급하는 문구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이 지역 제한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② 잠재조합원수 적절성

2022년 8월 9일 사회연대신협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사회는 2021년 신협중앙회 및 금융당국은 전국 회원들의 강력한 결속력을 증명하기 어렵기에 전국을 공동유대로 하는 단체신협은 인가가 어렵고, 사업적인 결속력이 좀 더 용이한 하나의 광역단위(서울)로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연대신협에 설립 동의한 조합원들은 전국 단위의 공동유대를 전제로 했기에 공동유대가 서울로 국한된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추진 조직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비록 전국조직인 연대회의의 서울소재 회원만 사회연대신협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긴 했지만, 연대회의에 서울 회원만 비대해진다면 연대회의 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신협 설립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 조합원의 참여 제한이 갖는 과장과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명분을 상실했다는 것이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을 분열시켰다. 또한, 잠재조합원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신협 내규를 준용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연대회의 회원을 최소 2,000명 이상 모집해야 했다.

3) 사업계획 타당성

사회연대신협이 제공한 2021년 9월 9일 신협중앙회 대응논의를 위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단체신협 인가를 위한 유관된 전문가들의 조언이 기술되어 있다. 이들은 단체신협 인가 관련 핵심요소로 3가지를 언급하고 있었다. 첫째, 시중은행 등 일반금융기관, 다른 지역신협 등과 차별화된 요소가 필요하며,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과 시중은행, 기존 신협 등과 다른 사업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공동유대에 속한 잠재조합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셋째, 사업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경제조직이자 건전한 금융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상기 내용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인가권자에게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으로 조합의 희망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으므로 예금취급기관이 부실화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동유대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률적 적합성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 시행령, 판례 등을 기준으로 법리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을 일컫는다. 정치적 판단이란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치를 위해 당시 사회·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표 20> 인가기준 및 쟁점 분석

구분	인가기준	쟁점
정치적 판단	사업타당성	추정 계획의 실현 가능성
	잠재조합원 규모	
	공동유대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
법률적 적합성	공동유대 및 조합원 자격	- 전국 vs 지역 - 간접 회원 vs 직접 회원

출처 : 필자 작성

사회연대신협 사례에서 쟁점을 논의했던 절차는 ① 신협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법 및 시행령을 보수적인 입장에서 해석 ② 사회연대신협은 공동유대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률적인 적합성 논증 ③ 인가권자는 시대적 환경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사단법인 정체성, 조합 설립 취지를 훼손시키는 무리한 요구 ④ 과도한 일정 지연, 인가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내부 분열로 추진동력 상실의 순서로 추진되었다.

정치적 판단이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당사자들의 힘의 논리로 결정되기 마련이다. 사회연대신협은 2년간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종사자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도 협동조합형 사회적은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회연대신협이 설립 인가에 대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협중앙회와 금융위원회를 설득할 만한 충분한 정치적 힘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정치적인 힘을 갖추는 것은 조합원들과 공동이 비전을 세우고, 적극적인 의지를 모아내는 실천적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결국, 사회연대신협의 실패는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미완의 꿈은 계속된다.

사회연대신협을 통해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살펴볼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또는 사회혁신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집단)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과 신협을 조직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은행을 만들어가는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뜻있는 사람들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사회적공감대를 확대하면서 사회운동으로 승화해가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사회연대신협에서 확인했던 현장이 의지와 관심을 새롭게 모아내고자 한다.¹²⁾ 미완의 과제는 지속된다.

12) 사단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웹사이트 : <http://socialen.org/>

기념포럼 2세션
[협동조합의 도전, 미완의 퍼즐, 미래의 상상]

사례발표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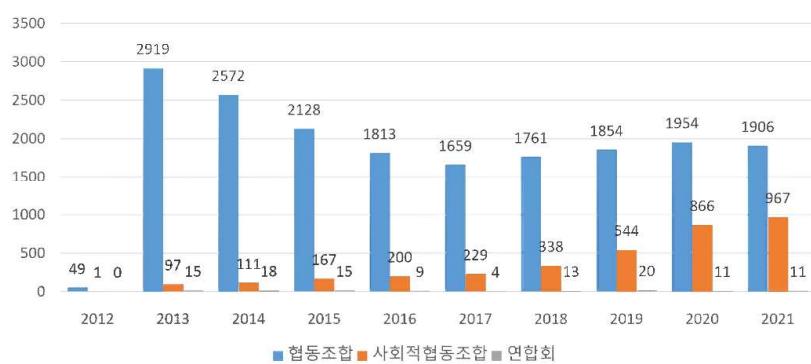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생태계의 상상과 도전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강 민 수 센 터 장

협동조합 설립현황

연도별 전국 협동조합 설립 현황(21년 12월 말 기준)



협동조합의 연도별 설립현황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폭발적 설립기(2013~14년)를 지나 설립 안정기(2015~16년)를 거쳐 2017년부터 점차 설립이 들어나고 있음

협동조합 설립현황

전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

2022년 10월말 기준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2021년 1년간 전국에 설립된 협동조합 개수입니다. ※ 전국 설립현황 데이터는 기획재정부 COOP 사이트 자료 참고

매년 2,000여개 이상 설립되던 협동조합 2022년에는 2,000개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3

운영 현황

13.06.27. 창립 (17개 회원)

서울지역 개별법 협동조합(신협, 생협)과 기본법 협동조합의 연합체

공통의 필요와 열망을 조직하는 협동조합적 사업모델 및 사업전략 채택

가치 사슬(기획 → 생산 → 마케팅 → 판매 → 관리) 단독 수행능력 없는 소규모 상태로

각자도생 中

- ▶ 서울지역의 대표조직이나 조직력 정체, 회원사인 기본법협동조합 사업역량 취약
- ▶ 이런 상황은 서울지역협동조합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4

협동조합의 성장단계



아직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는 어렵다.

5

희망의 근거들

사회적경제는 경제양극화 문제를 해결한 포용적 성장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음



6

희망의 근거들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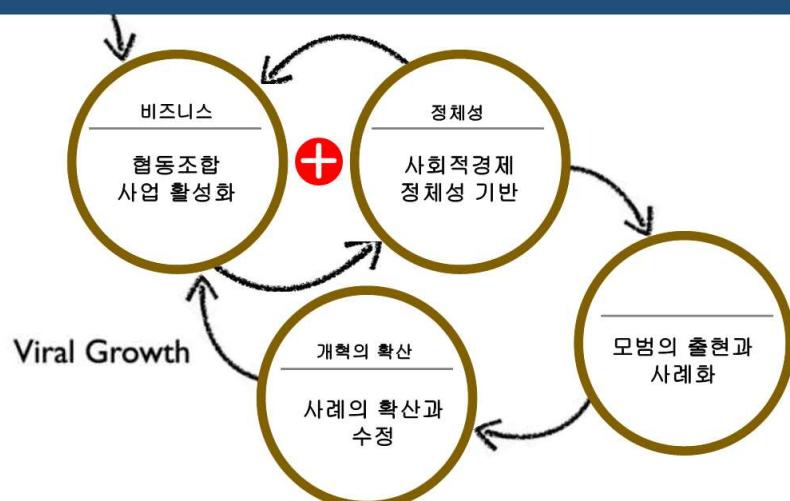
2018년 파타고니아의 이본 쉬나드는

"지구는 거대하지만 지구가 가진 자원은 유한합니다.
인류는 지구의 한계를 확실하게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매우 뛰어난
회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행동한다면 우리는 지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음

7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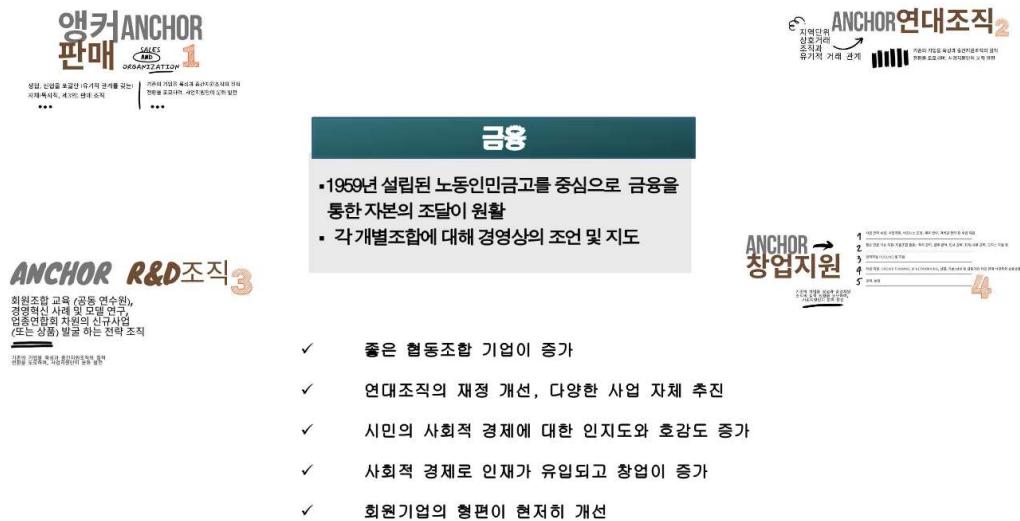
비즈니스가 없는 조직은 지속가능 하지 않고 사회적 영향력도 취약하다.



8

협동조합을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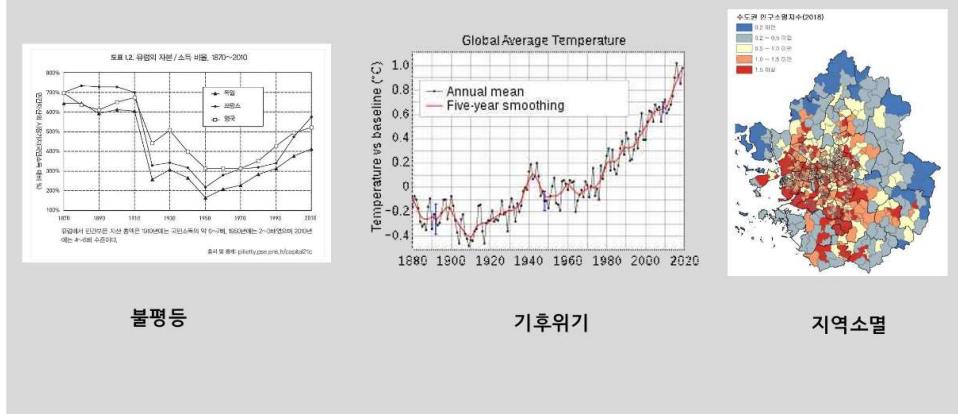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이 존재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9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 우리시대와 사회문제

심화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



모든 경제시스템은 사회시스템 안에 있고 사회시스템은 생명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환경을 해치면 안된다.

10

그럼 협동조합은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가?

심화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에 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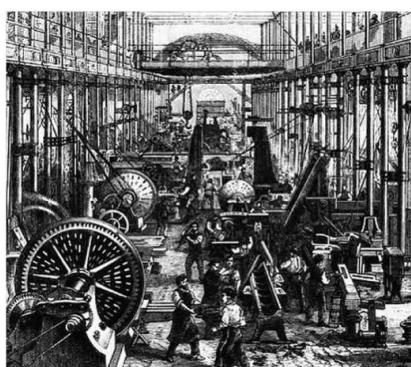


협동조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일하며 구성원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한다.

11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산업혁명과 로치데일 협동조합



〈표 1〉 품목별 영국 내 전체 소매 판매 중 소비자협동조합의 비중 추이 (단위 %)

	1900	1910	1920	1925	1930	1935	1939	1950
음식 가정 잡화	7.5-9.5	9-11	11-12.5	10.5-12	12.5-14	13-16	15-18	16.5-18
과자, 독서 필기구, 담배	1.0-2.0	1.0-2.5	1.5-2.5	2.0-3.0	2.5-4.0	3.0-5.0	3.5-5.5	5.0-6.5
의류, 신발류	4.0-5.0	4.5-6.0	5.0-6.5	5.5-7.0	6.5-8.0	6.5-8.0	6.5-8.5	8.0-9.5
기타 소비재	1.5-2.5	1.5-3.0	2.0-3.5	2.0-3.0	2.0-3.5	2.0-3.5	3.0-4.0	4.0-5.0
전체 품목	6.0-7.0	7.0-8.0	7.5-9.0	7.5-8.5	8.5-10	8.5-10	10-11.5	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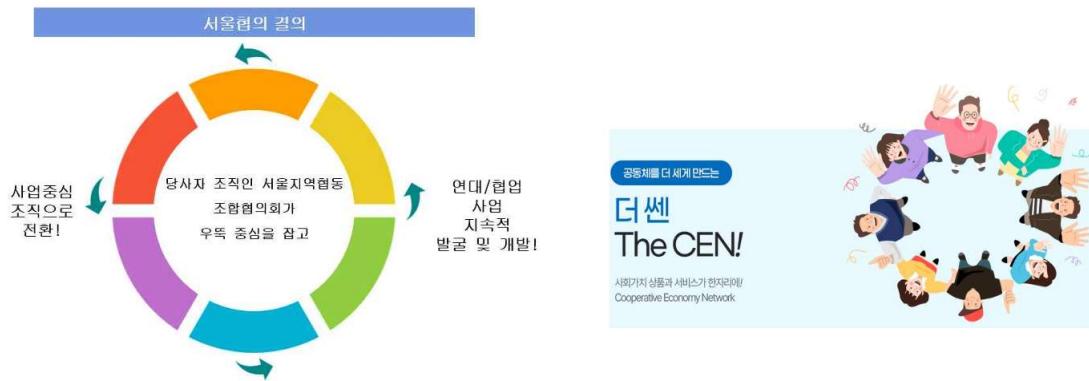
출처: Jefferys, 1954: 58

필요를 사업으로 만들고 상상이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는 것이 중요

12

다시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10년을 대표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다.



13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성장하려면 레가 협동조합

이탈리아 협동조합모델은 연합모델과 컨소시엄 모델을 통해 발전



<출처: 지노 마타렐리를 기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컨소시엄 CGM, 송직근>

14

각자도생

각자도생 [各者圖生]



극소 단위로 파편화되어 사회와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어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는 것

사회적존재

해체되지 않을 근거

1. 인간은 사회적존재 - 소속된다는 것
2. 작용과 반작용 - 사회는 있음

에밀 뒤르켐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직접 같이하며 느끼는 극도의 흥분 상태를 집단 열광(collective effervescence)이라고 하였음

뒤르켐은 이러한 성스러운 느낌을 통해 인간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고독감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

공동체와 사회가 해체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
1987년 마가렛 대처는 한 잡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사회? 그런 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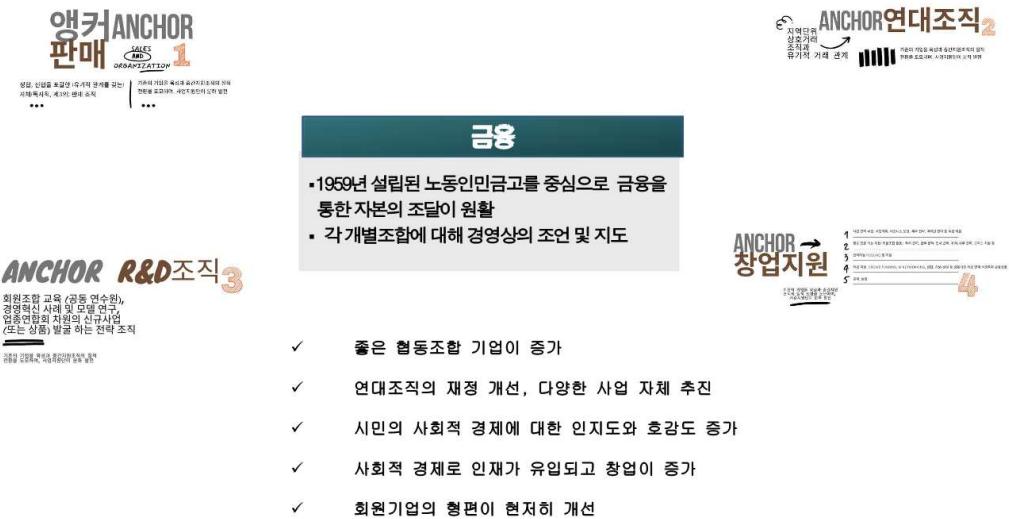
개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있고, 가족들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했지만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발생하는 결핍을 상업적 공동체가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오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체되지 않고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 갈 수 있을까?

10년 후의 과제 협동조합을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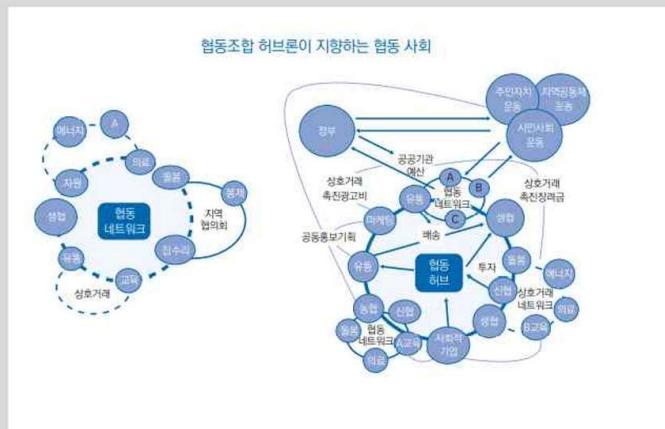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이 존재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17

그래서 함께 만들고자 하는 사회

관계가 살아있는 커뮤니티에 기반한 협동의 지역사회



출처 : 다시, 협동조합을 묻다

감사합니다.



기념포럼 2세션
[협동조합의 도전, 미완의 퍼즐, 미래의 상상]

사례발표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2부 기념포럼 “도전 · 성취 · 과제”
협동조합의 도전, 미완의 퍼즐 & 미래의 상상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윤 봉 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2부 기념포럼 “도전 · 성취 · 과제”
협동조합의 도전 미완의 퍼즐 & 미래의 상상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본 발제문은 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이 주관한
2022년 국회포럼 (2022.6.9)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과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2022.11.8)’,
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주최한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개편방향’(2020.11.30)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연대포럼 : 윤호중 외 15명 국회의원과 전국사회적경제연대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부 기념포럼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협동조합의 기본법 제정 목적

-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양극화 문제 완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

협동조합 정책 추진 방식

-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해 교육·홍보 등 간접적인 지원 중심으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함.
- 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 환경 조성이 중요(협동조합 기본계획 1차~3차)

협동조합 특성 ‘이용자소유기업’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충족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영리 추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 않음.
-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한다는 방식은 일반기업과 다른 협동조합만의 독특한 성격으로서,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조합원의 목적과 협동조합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게 된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세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임.

2부 기념포럼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표-1] 1, 2,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요약

구분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비전	일자리창출과 복지전달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일자리창출과 복지전달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Coop 2.0시대로 도약
목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
전략	시장진입 자금조달 인력양성 연대협력	자생력제고 고용친화적 분야확대 네트워크강화 인식개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협동조합간 연대강화 지역사회 중심운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 및 홍보 내실화
초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협동조합 내실화	협동조합 성장지원

출처 : 전국협동조합협의회(2022), “현장에서 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10년, 평가와 과제연구”(p38)

협동조합 제도개선 방향

타 법인과의 차별 시정과 공정한 여건 조성

새로운 협동조합 법인이 기존의 다른 법인과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하게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환경조성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법인 등 타 법인과 “법인”이라는 법인격 측면에서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존의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적 특성 측면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 영리법인으로서 일반협동조합과 주식회사 사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사단법인 사이에 법령에서 사업 활동분야를 달리 규정하고 있거나 차별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농협 수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 간에 활동이나 지원에서 차별 해소

→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과 내실화에 대한 이분법을 넘어 자생적 성장을 위한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

협동조합 향후 10년은 협동조합 존재 이유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10년을 생각해야 함.

- 협동조합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삶의 문제에 주목하고,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 협동조합을 특정한 부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보완 조직으로 축소하여 바라보거나 정책 수립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수적으로 협동조합을 규제하는 방법에 관해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협동조합을 하나의 기업유형으로 인식하고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구축과 정책 수립을 해야 함.
- 협동조합에 적합한 세제와 회계기준 등을 정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이 이용자 소유 기업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순기능을 확대해야 함.

2부 기념포럼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일반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

- 국제적으로도 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의 조합원 소유, 이용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 임여금 배당 2) 잔여재산의 배분이 가능한 국내 개별법 협동조합 역시 비영리 내국법인임.
- 일반협동조합은 국내 개별법 협동조합과 동일한 구조 및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영리법인으로 간주(상법 준용)

→ 협동조합 정체성, 고유한 조직적 속성에 혼란 초래, 세제상 불이익 받음.

[표-2]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의 법인 성격 비교

구 분	법인성격	임여배당	청산 시 잔여재산 배분
기본법	개별법 협동조합 협동조합	비영리 영리	가능 가능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불가능
			불가능

2부 기념포럼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협동조합 상호성 기준 정립과 세제 연계 방안

- 협동조합 기본법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 협동조합이 상호성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상호성 기준을 준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개별법 협동조합에 적용하고 있는 세제 지원제도를 일반/사회적협동조합 모두에 적용
- 이탈리아의 경우 조합원 이용비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면 상호성에 기반한 협동조합으로 인정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음.

→ 협동조합 상호성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는 방향에서 방안 모색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연합회 활성화를 위하여 _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개별법 협동조합의 범위 확대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다른 법률(개별법 협동조합)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있는 추세임. 다만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에 따라 이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개별법협동조합과 협력, 협동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자격을 확대하게 되면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임.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자격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모두 가능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연합회 활성화를 위하여 _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자격 확대

-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의 경우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 설립할 수 있음
- 그러나 연합회의 회원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연합회 회원으로 타 연합회가 가입함으로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고 규모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음.
- 보다 큰 협동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연합회 회원으로 연합회가 가입하는 것, 단위 협동조합 설립할 때 법인 조합원으로서 2차 협동조합인 연합회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바 연합회의 회원으로 2차 협동조합인 기존의 다른 연합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직에 기존의 다른 연합회도 포함

2부 기념포럼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차별과세 _법인세 과세의 차별

-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과세 방법이 상이
-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서 모든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됨(10%, 20%, 22%, 25%)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소득의 50%(사업소득)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 낮은 세율(9%, 20%)로 법인세 과세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도 개별법 협동조합 처럼 당기순이익 토대로 법인세 과세되도록 개선

[표-3]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 방법

구 분	과 세 방 법	
개별법 협동조합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과세	
기본법	협동조합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
	사회적 협동조합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소득의 50%(사업소득)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2부 기념포럼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차별과세 _조세지원의 차별

- 협동조합 조세지원은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집중되어 있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조세혜택을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그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임.
- 협동조합간 과세 차별(공평성) 해소 필요. 중장기적으로 조세지원 통일하도록 개선

[표-4]협동조합의 조세지원 현황

구 分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배당소득
개별법 협동조합	○	○	○	○
기 본 법	협동조합	×	×	×
	사회적 협동조합	○	×	×

2부 기념포럼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차별과세 _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차별과세

-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으로부터 출자배당과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음.
이때 소득세가 과세됨.
- 개별법에 따른 8개의 협동조합 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은 1,000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됨.
-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경제적 기업으로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자금은 조합원이 납입하는 출자금에 의존하고 있음.
-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구성원이 납입하는 출자금에 대해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출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개별법 협동조합 중 일부 적용하고 있는 1,000만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나머지 협동조합으로 확대 적용

2부 기념포럼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차별과세 _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따른 취득세 · 등록면허세 과세

[표-5] 조직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구 분	취득세 과세	등록면허세 과세
물적회사간의 조직변경(상법)	유한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
인적회사간의 조직변경(상법)	합명회사⇒ 합자회사	×
	합자회사⇒ 합명회사	×
물적회사에서 인적회사로 조직변경 (상법 이외 법률)	○	○
인적회사에서 물적회사로 조직변경 (상법 이외 법률)	○	○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차별과세 _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따른 취득세 · 등록면허세 과세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소속 구성원의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로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 법인 등이 보유한 부동산 및 차량을 협동조합으로 이전함으로써 법인 등에서 협동조합으로 명의를 변경할 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지가 문제
- 지방세법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세권자의 해석에 따라 취득세 등의 과세여부가 달라짐.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차별과세 _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따른 취득세 · 등록면허세 과세

- 조직변경 전후의 양자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석
-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한 사례에서 제2심(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이 물적회사와 인적회사 간의 조직변경도 동일성을 유지하여 부동산 등의 이전에 대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판결한 사례를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대법원 판결이 아니므로 처분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음)
- 주식회사 등을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 조직변경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비과세 되도록 입법 개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반적인 조세지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그것을 토대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

2부 기념포럼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국가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생활 안전망을 보완해 질병, 상해, 실업 등의 공동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시작
- 현재 기본법 공제는 회원조합인 회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법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성격의 공제만 가능
- 새마을금고·신협·수협의 공제는 비회원 이용을 허용해 일반 공제로 분류 vs 협동조합기본법의 공제는 비회원 이용이 원천불가한 조합원 상호부조에 기반한 사업

2부 기념포럼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_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대상 확대

- 일반협동조합은 왜 상호부조와 소액대출 사업을 할 수 없는가?
- 사회적협동조합은 왜 협동조합연합회가 수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가?
- 협동조합연합회는 왜 회원만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해야 하는가?
-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사업의 방법을 금전지급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왜 불합리한가?
- 소액대출을 포함한 상호부조 사업을 출자금의 한도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왜 불합리한가?

[표-6] 협동조합기본법 상 상호부조, 공제사업, 소액대출 사업 비교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개별법 협동조합
공제사업	×	×	△ (회원조합인 법인만 가능)	○ (조합원 대상 가능)
상호부조	×	○ (주사업 이외의 사업)	△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대상, 회원조합의 조합원은 제외)	
소액대출	×	○	△ (정관에 따라 회원에 대한 (긴급)금융지원 사업)	

2부 기념포럼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세상으로”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_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제대상 확대

- 현재 연합회 회원인 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문제에서 조합원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 성격의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 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을 법인인 ‘회원’에서 ‘조합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필요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도입의 취지는 안정적인 규모의 연합회 설립을 위해 생협과 신협이 참여 가능하도록 함. 연합회 고유사업인 공제사업의 대상 제한으로 정책목표로 삼은 안정적 규모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유인 왜곡
- 생협법과 신협법 상 가능한 조합원 대상 공제가 생협과 신협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 경우 조합원 대상의 공제사업을 불가하게 됨.

2부 기념포럼 “협동조합의 제도환경, 미완의 퍼즐들”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세상으로”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_ 상호부조 사업의 한도기준 변경

-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은 소액대출과 함께 사업한도를 출자금 총액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호부조 사업은 소액대출과 달리 시행령에 따라 상호부조 회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 상호부조사업의 재원과 한도를 통일해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필요
-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은 조합원 대상의 상조회임. 상호부조 사업을 출자금 총액 한도로 국한할 경우 사회안전망 성격의 상호부조 활동이 축소되고 현실적인 상호부조 행위 제한

[표-7]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및 소액대출 비교

구 分	사업한도	재원	회계처리	비조합원 이용
주 사업	예산 내 범위	제한없음	정관으로 정함	가능
상호부조	출자금 내 한도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	별도 회계 구분	불가
소액대출	출자금 2/3한도	출자금	별도 회계 구분	불가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_ 상호부조 사업의 한도기준 변경

-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은 공익적 사업을 위한 조합원간의 자조적 사업이며 사회안전망 목적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회비의 꾸준한 적립은 준비금 성격의 높은 건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생할 피해 및 조합원 위험이 현실적으로 매우 적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은 회계연도 이후 4개월 이내 경영공시를 통해 상호부조 활동과 결산자료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분리와 주사업 비율(40%)을 통해 상호부조 사업의 건전성 보호
-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사업의 한도를 납입출자금이 아닌 회비로 변경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사업이란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 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 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과제들

①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 일반협동조합의 상호부조와 소액대출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에 준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연합회 공제사업을 회원조합의 ‘조합원’까지 공제사업이 가능하게 개정
-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사업의 방법을 금전 지급으로만 한정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
- 상호부조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와 상호부조 목적을 위해 적립한 적립금을 더하여 그 총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행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기업과 다르게 상호성, 민주성, 연대성이라는 협동조합 고유의 정체성이 비즈니스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상호부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이 필요함.

협동조합 특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통합적 관점에서 협동조합 제도개선 접근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재정립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조직형태로서 협동조합

타법인과의 차별시정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운영원리 중심으로 제도 개선



무언가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그 문제를 해결한다.

감사합니다





20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2022년 12월 1일 (목) / 국회도서관 대강당

[기념선언]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20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2022년 12월 1일 (목) / 국회도서관 대강당

[기념선언]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금융위기는 과연 우리의 삶이, 사회가,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찰을 바탕으로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언하고 탐욕이 아닌 필요의 충족을 위한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책임있는 경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의 중요 행위자로서 협동조합에 주목했습니다. 오랜 협동조합인들의 염원에 힘입어 한국에서도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산업 분야, 특정 유형에 국한하여 제도화되었던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의 지평을 연 협동조합기본법이 2011년 12월 29일 제정되었고 그 이듬해인 2012년 12월 1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3,000여개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전국적으로, 그리고 거의 모든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시간동안 우리는 협동의 힘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들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불평등과 양극화, 극심한 불균형, 기후위기 등의 시대적 문제들에 직면하여 협동과 연대의 힘으로 더 나은 오늘과 미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해왔습니다. 탐욕적 경제활동, 산업의 폐단을 극복하는 민주적인 경제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 소상공인, 소비자, 노동자, 생산자 등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자조, 협력과 연합의 심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적 돌봄의 체계 구축, 지속 가능성의 중심에 둔 발전의 추구 등 협동조합은 오늘의 위기극복과 회복에 필요한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주체로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협동조합이 보여준, 실현하고자 한 가치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집단과 집단 사이의 불공정한 관계, 인류와 지구 환경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을지 모르는 지속가능성을 넘어서는 탐욕은 없어져야 하고 공존의 가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아닌 필요의 충족을 위한 경제, 서로를 지켜주고 존중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는 언제나 협동조합의 시대적 소명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꿈꾸고 도전해야 합니다. 무한의 경쟁,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논리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며 실효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여야 합니다. 대안을 넘어 생활의 현장에서 실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로서 사람들의 생각, 행동, 삶의 방식이 바뀌어가게 된다면 협동조합운동은 성공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운동의 가치와 소명은 법률과 제도, 정책의 한계를 한참 넘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도를 혁명하게 활용해야 하지만 언제라도 그 틀과 한계에 갇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은 법과 제도가 있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협동하려는 의지와 도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협동과 연대의 힘을 회의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정체성을 더욱 고양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지 늘 자문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온 길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오늘,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바다를 상상하면서 도전과 행동에 나설 용기를 서로 북돋우며 아래와 같이 함께 결의합니다.

우리는

- 협동의 힘,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믿으며 기본법, 개별법 협동조합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갈 것이다.
-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해 자원, 경험, 지혜의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 넓고 더 깊은 협동의 체계를 만들 것이다.
- 사회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며 전 세계 협동조합들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바탕하여 모든 사업과 활동을 추진해 갈 것이다.
- 지역과 사회의 이웃과 미래세대에 협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전하며 늘 이웃들과 함께 할 것이다.
- 국회, 정부, 지자체 등이 협동조합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돋는 한편 불가역적인 진흥 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및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10년

기념행사를 함께 연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http://www.nca.or.kr>